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04. 3. .

제 안 자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1. 제안경위

가. 제244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2004. 1. 8)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제244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04. 1. 13)에서 선거법소위원회가 구성됨.

나. 제244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 제2차 · 제3차 · 제4차 · 제5차 · 제6차 · 제7차(2004. 1. 15, 1. 16, 1. 19, 1. 26, 1. 27, 1. 28, 1. 29), 제245회 국회(임시회) 제8차 · 제9차 · 제10차 · 제11차(2004. 2. 2, 2. 3, 2. 4, 2. 5)선거법소위원회에서 의원발의 법률안과 선거관리위원회 및 범국민정치개혁위원회가 제출한 안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24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04. 2. 9)는 선거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심사 · 의결함.

라. 제24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04. 2. 9)에서 의

결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중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결과를 반영하기 별표부분을 추가하기 위하여 제245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04. 3. 2)에 번안의결하였음.

2. 제안이유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치러 지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완하고, 합동연설회 및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를 폐지하고 신문방송 등 각종미디어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확대함으로써, 고비용 선거구조를 혁신하고, 선거비용지출의 투명화를 기하는 등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루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8조의5 및 제8조의6 신설).

나. 방송을 이용한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선거기간중의 대담·토론회 및 선거기간전의 정책토론회를 주관하도록 함(안 제8조의7 신설).

다. 선거부정감시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로 선거일전 120일부터 50인 이내로 구성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사이버선거부정 감시단을 선거일전 120일부터 30인 이내로 구성하여 선거일까지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마.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한 자 또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과 관련된 죄를 범한 자는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함(안 제18조제1항제3호)

바. 국회의 의원정수는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함(안 제21조제1항)

사.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을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위촉하되 당적을 가진 자와 국회의원은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원내정당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함(안 제24조제2항·제3항·제7항 신설).

아.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을 14일로 단축함(안 제33조제1항제2호)

자. 후보자등록시 첨부하는 서류중 납세실적 증명서의 경우 종전에는 후보자의 최근 3년간 납세실적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최근 5년간 후보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로 확대하고 체납실적을

추가하였으며,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 등에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의 학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안 제49조제4항제4호).

차.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병역사항, 납세실적, 전과기록 등의 기록을 제출받아 이를 유권자에게 발송하도록 함(안 제49조제13항)

카. 기탁금 반환시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50%를 반환토록 함(안 제57조제1 항).

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시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3호 신설)

파. 선거일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각 1개 이내 설치, 명함 형인쇄물 직접 배부, 이메일 발송,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인쇄물 발송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안 제60조의3·안 제61조의2 신설).

하. 정당은 선거에 관한 정당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구·시·군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2).

거.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를 착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68조제2항).

너.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20회 이내의 신문광고, TV 및 라디오를 이용하여 각 15회 이내의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록 함(안 제69조제1항제2호·안 제70조제1항제2호 신설).

다. 합동연설회 및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를 폐지함(안 제 75조 내지 제78조 삭제).

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사회자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장장치를 이용하여서만 연설·대담할 수 있도록 하되, 1일 1인에 한하여 들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는 연설원 또는 사회자가 연설·대담을 하는 장소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8항 및 제11항).

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선거기간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2회 이상 실시하고, 선거기간전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82조의2·안 제82조의3 신설).

버.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에 위법한 정보가 게시되거나 전송중인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정보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스팸메일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도록 함(안 제82조의4 및 제82조의5 신설)

서.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82조의6 신설)

어.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구역의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1년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등 제공을 금지하기로 함(안 제86조제3항 신설).

저. 출판기념회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하도록 함 (안 제103조제4항 신설).

처. 의정활동보고는 선거일전 90일부터 금지하기로 함(안 제111조 제1항).

커. 기부행위는 현행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던 것을 상시 금지하도록 하되, 친족에 대한 축·부의금 제공등은 허용하기로 함(안 제112조).

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방식을 항목별 산정에서 총액산정으로 변경하기로 함(안 제121조 신설).

퍼. 선거비용은 1회 2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등 사용을 의무화하고 현금지출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7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허.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상시 관계인에게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법한 선

- 거비용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4조제1항 및 제2항)
- 고. 정당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총 70회 이내의 신문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7조제1항제1호).
- 노. 정당은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월 2회 이내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7조의2제1항 제1호).
- 도. 확대당직자회의를 폐지하기로 함(안 제142조 삭제).
- 로. 재·보궐선거의 투표시간은 현행 오후 6시까지에서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기로 함(안 제155조제1항).
- 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게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도록 함(안 제189조)
- 보. 선거범죄에 있어서 행위자 이외에 정당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을 확대적용하기로 함(안 제260조).
- 소. 형사소송법에 의한 현행범 및 준현행범이 선거범죄의 조사와 관련한 동행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1조제1항제2호).
- 오. 경미한 금품수수 등에 있어서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현행 형벌을

부과하던 것을 받은 가액의 50배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61조제4항 신설).

조. 선거범죄 신고자등의 신상보호를 위해 조사과정에 인적사항 기재
를 생략하는 등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의 제규정을 준용하 도록 함
(안 제262조의2 신설).

초.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지출하여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
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서를 허위기재하거
나 고의로 누락하여 같은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기로 함(안 제263조제1항).

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무
효되는 형의 요건을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하고,
범죄의 종류에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추가하였으며, 연대책임대상에
회계책임자로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나 후보자와 통모하여 선거비용
제한액이 3분의 1이상 지출한 자를 포함하 며, 선거사무장·회계책
임자의 경우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65조).

토.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에 대하여는 반환 또는 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함(안 제265조의2 신설).

포.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에 이르는 형의 확정판결전 사직한 자

- 는 당해 보궐선거등의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함(안 제266조제2항).
- 호. 선거일후 행하여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행위시부터 6월로 하
되,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
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선거일후 3년으로 함(안 제268조제1항).
- 구. 선거법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2회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하는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0조의2 신설).
- 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종전에는 금품·향응제공 선거 범죄
의 경우에만 증거물품 수거, 동행 및 출석요구를 할 수 있 던 것을
모든 선거범죄의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되, 후보자에 대하여는 선거일
후에만 출석 또는 동행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2조의2 제2항
및 제4항).
- 두.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 선거관
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받아 선거
법위반 혐의가 있는 자의 통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72조의3 신설).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政黨・候補者”를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8조의5 내지 제8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정당의 당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⑨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①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④인터넷언론사는 제3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내용·크기·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방송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등”이라 한다)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

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 및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방송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 학식과 덕망있는 자중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자를 포함하여 9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에 있어서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⑨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⑩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말한다)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말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政治活動이”를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로 하며, 동항제3호중 “候補者, 候補者の”를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로 하고, 동항제4호중 “候補者(候補者が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후보자”로 하며,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제10조의2제1항중 “選舉期間開始日 전 10일부터 選舉日까지”를 “선거일 전 120일(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정당(선거기간전에는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및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선거기간중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각 동수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경우 정당이 추천하는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수가 전체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수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수에 해당하는 선거부정감시단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다.

④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감시단을 나누어 조를

편성·운영하는 때에는 정당이 추천한 선거부정감시단원의 균형있는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감시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선거부정감시단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각각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종류·실시지역 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②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구성한다.

③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제2항 후단·제3항·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부정감시단”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으로 본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選舉犯으로서”를 “선거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

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로 하고, 동항제4호중 “判決”을 “판결 또는 다른 법률”로 하며, 동조제3항중 “第2項의 選舉犯과”를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273人으로 한다.”를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로 한다.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③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⑦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제1항 후단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제2항의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중 “17日”을 “14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候補者登録申請開始日”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동조제2항중 “木曜日”을 각각 “수
요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木曜日”을 각각 “토요일”로 하고, 동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중 “늦어도 選舉日前 23日에”를 “선거일전
20일까지”로 하고, 동조제5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선거일 또는 선거일전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토요일로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95조(재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제37조제1항중 “22日”을 “19일”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올라 있는”을 “오를 자격이 있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居所投票者인 때에는”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1. 부재자투표사유(거소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거소투표사유를 말한다)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3. 주소, 거소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의 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제1항제3호의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3.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

4.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49조제1항중 “22日”을 “24일”로, “16日”을 “15일”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申告書[당해 選舉가 있는 해의 前年度 12月 31日 현재의 登録對象財産에 관하여 候補者登録申請전까지 公職者倫理法 第10條(登録財産의 公開)의 規定에 의하여 登録對象財産을 公開한 者인 경우에는 그 登録對象財産의 公開를 확인할 수 있는 書類를 말한다]”를 “신고서”로 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 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제13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

거운동)제4호의 인쇄물,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제66조(소형인쇄물)의 소형인쇄물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제49조제6항중 “地區黨創黨承認取消”를 “시·도당 창당승인취소”로 하고, 동조제8항중 “아니하거나 公職者倫理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財産을 公開한 候補者の 登錄對象財産公開確認書類가 제출되지 아니하는”을 “아니한”으로 하며, 동조 제10항중 “90일”을 “150일”로 하고, 동조제12항중 “제5호”를 “제6호”로, 동조동항 단서중 “選舉期間이 아닌 때에는 이를 누구에게든지”를 “선거일 후에는 이를”로 하며, 동조제13항중 “書式”을 “서식, 공개방법,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제출·발송·서식, 소명자료의 서식 및 분량”으로 하여 동항을 제1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동봉하여 관할구역안의 매 세대에 발송하여야 하며,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부재자신고 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에게도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1.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각 재산총액과 재산의 항목별 각 소계

2. 병역사항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
· 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연도별 납부액, 연도별 체납액 및 완납시기(제4항제4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한 후보자의 직계존속의 납부 및 체납실적은 제외한다)

4. 전과기록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

5.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기재내용이 후보자가 제출한 제4항 각호의 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중 “地區黨創黨承認取消”를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중 “발견되거나 同條 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對象財産公開確認書類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者중 登錄對象財産이 公開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를 “발견된 때”로 하고, 동항제6호중 “地區黨創黨承認取消”를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하며, 동항제8호중 “第2項”을 “제2항 및 정당법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제3항”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 또는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名簿에 올라 있는 候補者중 當選人이 없는 때 또는 候補者(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와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를 제외한다)가 辭退·登錄이 無效로 되거나 그 得票數가 第1項第1號에 미달되는 때에는 選舉日후 30日 이내에 寄託金중에서 第5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寄託金에서 부담하는 費用을 뺀 나머지 금액은 國家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귀속한다. 이 경우 第5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寄託金에서 부담하여야 할 費用이 寄託金”을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선거일후 30일 이내에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이 경우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해당 기탁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으로 한다.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중에서 제56조(기탁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선거일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제59조중 “당해 候補者의 登録이 끝난 때”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로 하고, 동조에 단서 및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예비후보자

(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제60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3.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제60조제1항제8호중 “말한다)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말한다)”로 한다.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제외한다)는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예비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3.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제2항 및 정당법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③예비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되, 피선거권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조회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⑤제52조(등록무효)제2항의 규정은 예비후보자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본다.

⑥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다만, 지하철역구내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4.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수(그 수는 2만을 초과할 수 없다)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제6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選舉連絡所”를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당·정당추천후보자 또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

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무소에 둘 수 있다.

④예비후보자가 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당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본다.

⑦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하며, 이를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예비후보자에게 즉시 선거사무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각 1개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중에서 소장 1인을 두어야 하며,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설치연월일
2.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
3. 소장 및 회계책임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4. 사무소인(印)

④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는 모두 합하여 4개 이내로 한다.

⑤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하여 당해 정당을 대표한다.

⑥정당은 선거일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즉시 폐쇄하여야 한다.

⑦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정당선거사무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제62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政黨 또는 候補者”를 “정당·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

4항중 “(第2項第1號 및 第3號의 경우에는 政黨의 會計責任者)”를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정당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63조제1항중 “政黨 또는 候補者”를 “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政黨·候補者·選舉事務長”을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으로, “第62條(選舉事務關係者の 選任)第2項”을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중 “學校名과 수학기간(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은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로, “기재하여야 한다.”를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후보자 등록 등)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第122條(選舉費用制限額 등의 公告)의 規定에 의하여 選舉費用制限額을 公告하는 때에 함께”를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로 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어깨띠) ①후보자는 자신의 사진·성명·기호 또는 소속정당명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다.

②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를 착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깨띠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9조제1항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政黨推薦候補者는 그 推薦政黨”을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候補者登錄후”를 “선거기간개시일부터”로 하고, 동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20회 이내

제70조제1항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政黨推薦候補者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를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5회 이내

제71조제1항제3호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중 “廣域市안에 있는 放送施設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당해 市·道안에 地域放送施設이 없

는 서울特別市에 인접한 市·道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다른 市·道안에 있는 放送施設을 말한다.”를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로 하며, 동조 제5항후단 및 제6항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제1항중 “候補者(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を 말한다)”를 “후보자”로,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75조 내지 제7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제1항중 “候補者(比例代表國會議員選舉와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를 제외한다) 또는 그 配偶者나”를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으로, “區·市·郡選舉連絡所”를 “각 선거연락소”로, “候補者가 演說·對談을 하는 場所마다 選舉事務員”을 “후보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紹介와”를 “소개 또는”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없으며, 확정장치는 候補者の 경우 그 配偶者가, 市·道知事選舉에 있어서 區·市·郡選舉連絡所の 경우 2人の 演說員이 공동 또는 교대로 사용할 수 있다.”를 “없다.”로 하며, 동조제6항중 “宣傳壁報 規格의 2倍 이내 크기의 候補者 사진”을 “후보자 사진”으로 하고, 동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9항중 “區·市·郡選舉連絡所の 管轄區域안에서만”을 “선거구안에서만”으로 하고, 동조제11항을 다음과 같

이 하며, 동조제12항중 “자동차·확성장치와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場所의 標識의 規格·기재사항 및 檢印, 錄畫器”를 “녹화기”로 한다.

⑧후보자가 제1항 후단의 사회자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자는 당일에는 교체할 수 없다.

⑪사회자는 제3항의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서만 연설·대답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연설원 또는 사회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답을 하는 장소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80조 각호외의 부분중 “第77條(政黨·候補者 등에 의한 演說會)의 演說會 또는 第79條”를 “제79조”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제81조제1항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各號의1”을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으로, “候補者(比例代表國會議員

候補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對談者 또는 討論者”를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당해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2회 이상

②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

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

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⑤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합동 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⑥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⑧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

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한다.

⑩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⑪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그의 부담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⑫대담·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의3을 제82조의4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82조의3 및 제8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

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 ②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5항 내지 제7항·제8항 본문·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 ③정책토론회의 운영·진행절차·개최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및 선거운동정보의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다.

④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만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당·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주민등록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④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 인

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자가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허무인 또는 타인 명의의 아이디(이용자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는 의견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아이디로 게시된 의견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84조의 제목중 “無所屬候補者 등”을 “무소속후보자”로 하고, 동조 본문중 “自治區·市·郡議員選舉의 候補者와 無所屬候補者”를 “무소속후보자”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말한다)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選舉期間開始日전 30日(補闕選舉등”을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으로, “選舉日까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외에”를 “선거일까지”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政黨의 地區黨단위 이상의”를 “정당의”로 하고, 동조제3항각호외의 부분중 “第4項”을 “제5항”으로 하여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기간 동안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1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2. 제1호외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3.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새마을운동협의회 ·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 · 단체
7.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 · 단체

②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 · 동우회 · 향우회 · 산악회 ·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제89조제1항중 “기존의 機關 · 團體 · 組織 또는 施設을 이용하거나 새로이 設立 또는 設置할 수 없다. 다만, 政黨의 中央黨 · 黨支部 · 地區黨 또는 區 · 市 · 郡黨連絡所의 事務所에 設置되는 각 1개의 選舉對策機構

와”를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우편·통신에 의한 모금) 또는 같은 법 제6조의6(광고에 의한 모금)의 규정에 의한 모금을 위한 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의2를 삭제한다.

제91조제1항중 “演說會場,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場所, 對談·討論會場 또는 政黨의 集會場所”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으로, “選舉期間중 選舉運動”을 “선거운동”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단서중 “第77條의 規定에 의한 演說會場과 第79條”를 “제79조”로, “第79條의 規定에 의한 演說·對談을 위하여 같은 條”를 “같은 조”로 한다.

제9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함을 선거일전일까지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중 “第77條(政黨·候補者등에 의한 演說會)의 演說會 또는 第79條”를 “제79조”로 한다.

제101조중 “演說會 또는”을 “연설·대담 또는”으로 한다.

제102조중 “演說會와”를 “연설·대담과”로 한다.

제103조제1항중 “향민회”를 “향우회”로, “말한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말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104조중 “演說會場, 公開場所”를 “공개장소”로, “演說會場 등”을 “연설·대담장소 등”으로, “演說會 등”을 “연설·대담 등”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누구든지 제6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누구든지”로 한다.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2인(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5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제3항중 “演說會 또는 公開場所”를 “공개장소”로 한다.

제109조 단서중 “개인용컴퓨터”를 “인터넷(광고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 본문중 “개인용컴퓨터”를 “인터넷”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選舉期間開始日”을 “선거일전 90일”로, “議政活動”을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으로 한다.

제112조의 제목 “(寄附行爲의 定義 및 제한기간등)”을 “(기부행위의 정의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부분 중 “者에 대하여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를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하며, 동항제1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第4項의 寄附行爲制限期間이 시작되는 때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寄附行爲制限”을 “기부행위제한”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나.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다.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내에서 정당이 소속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행위

라.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대회등과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기타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이나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를 제공하는 행위

마.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바.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게 연

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다.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

사료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라.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과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

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

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료의 음식물을 제공

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

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사.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

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식사료의 음식물(온천장·관광

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

대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아.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장애인복지법 제4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 및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의 규정에 의한 복지증진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과약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1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114조제1항 전단중 “政黨(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을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으로, “寄附行爲制限期間중 選舉期間전에는”을 “선거기간전에는”으로 하고, 동조동항 후단중 “所屬政黨의 名義를 推定”을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으로 한다.

제115조 전단중 “寄附行爲制限期間중에 당해 選舉에 관하여”를 “선거에 관하여”로 하고, 동조 후단중 “所屬政黨의 名義를 推定”을 “소속정

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으로 한다.

제116조중 “寄附行爲制限期間중 당해 選舉에 관하여 政黨(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를 “선거에 관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1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19조제1항 전단중 “候補者(大統領選舉)”를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며, 대통령선거”로,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로, “政黨”을 “정당·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으로 한다.

제120조제1호중 “候補者登録전의 選舉運動”을 “선거운동”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第112條(寄附行爲의 定義 및 제한기간등)”을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등)”으로, “儀禮的이거나 職務상의 행위”를 “행위”로 하며, 동조동호 단서중 “같은條같은項第4號가目 및 第5號가目”을 “동조동항제1호 마목 및 제2호 사목”으로 한다.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

1. 대통령선거

인구수×950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3억원+(인구수×20원)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

4천만원+(인구수×100원)

5.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4천만원+(인구수×50원)

6. 시·도지사선거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선거

4억원(인구수 2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원)+(인구수×300원)

나. 도지사 선거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인 때에는 3억원)+(인구수×250원)

7. 자치구·시·군의원선거

3천500만원+(인구수×100원)

8.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9천만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100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

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이하 “제한액산정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액산정비율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 때마다 정한다.

③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을 위한 인구수의 기준일, 제한액산정비율의 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 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제132조(수입과 지출보고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선거

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하며, 허위로 보고하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지출하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이 경우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4.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개최비용

5.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

제123조제1항중 “(選舉連絡所)를 “(예비후보자를 포함하며 선거연락소”로, “候補者登録申請후 지체없이 選舉事務所와 選舉連絡所마다 選舉費用에 관한 收入과 支出을 행할 會計責任者 1人을 選舉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選任하여 그 姓名・住所 및 住民登録番號를 당해 選舉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회계책임자 1인을 선임하여 그 성명・주민등록번호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중 “第122條(選舉費用制限額등의 公告)”를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로 한다.

1.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2.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 :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를 하는 때

제125조제1항중 “담당한다”를 “담당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담당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候補者”를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7조제1항중 “候補者”를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할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 또는 수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금액이 20만원(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총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의 지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9조제3항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第3項 前段”을 “제3항”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중 “收入과 支出報告書・第129條(會計帳簿의 비치・기재) 第1項第2號에 規定된 사항을 기재한 選舉費用의 收入과 支出明細書 및 第130條(領收證 기타 證憑書類)의 規定에 의한 領收證 기타 證憑書類”를 “다음 각호의 서류”로, “政黨(당해 選舉區에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말한다)・候補者・選舉事務長・選舉連絡所長 또는 당해 選舉區의

選舉人(이하 이 條에서 “閱覽人”이라 한다)에게 公開하여야 한다. 다만, 閱覽期間이 아닌 때에는 이를 누구에게든지 公開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동항에 제1호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중 “閱覽”을 “열람·공개”로 한다.

1. 수입과 지출보고서
2. 제129조(회계장부의 비치·기재)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3. 제130조(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제134조제1항중 “收入과 支出報告書를 받은 選舉管理委員會와 그 上級 選舉管理委員會”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候補者”를 “후보자·예비후보자”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 법에 위반하여 선거비용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계좌에 입·출금된 타인의 계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계좌개설 내역
2. 통장원부 사본
3. 계좌이체의 경우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
4. 수표에 의한 거래의 경우 당해 수표의 최초발행기관 및 발행의뢰인의 인적사항

③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5조의2제2항중 “候補者・選舉事務長”을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중 “定期刊行物(通信을 제외한다. 이하)”를 “정기간행물(이하)”로 하고, 동항제1호중 “120일”을 “90일”로, “50회”를 “70회”로 한다.

제137조의2제1항제1호중 “그가 지명한 者가 행하되, 選舉日전 60日부터 選舉期間開始日전일까지 1回 10分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 각 6回이내”를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명한 자가 행하되,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월 2회(선거기간개시일전일이 해당 달의 10일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내”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그가 지명한 者”를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며, 동조제4항중 “第82條의2(公營放送主管 텔레비전 對談・討論會)第1項의 公營放送社”를 “공영방송사”로,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로 각 2회의 放送演說의 費用(製作費用을 제외한다)은 당해 公營放送社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를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을 제외한다)은 당해 공영방송사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9조제1항 후단중 “演說會場과 公開場所”를 “공개장소”로 한다.

제140조제1항중 “120日(補闕選舉등)”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으로, “所屬黨員”을 “소속당원(후보자선출대회인 경우에는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黨部”를 “정당은”으로, “당해 地區黨의 創黨大會등에 한하여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0枚이내의 創黨大會등의 告知를

위한 告知壁報를 첩부하고, 創黨大會등의”를 “창당대회등의”로, “2枚”를 “5매”로 하며, 동항 후단중 “新聞公告・告知壁報”를 “신문공고”로 하며, 동조제4항중 “告知壁報와 標識”를 “표지”로 한다.

제141조제1항중 “修練”을 “수련・연수・교육”으로, “아니하나 그 面接시에 食事・茶菓 또는 飲料의 제공이 부가되는 때에는 금지된 黨員集會로 본다.”를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당이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기타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③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의 장소

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당해 정당이 보상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당원집회 장소의 외부에는 이 법에 의한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하되, 그 개최자는 당해 집회 종료후에는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지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구호 기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⑥당원집회의 신고, 표지의 규격 또는 매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2조 및 제14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4조제1항중 “地區黨”을 “시·도당”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정당의 시·도당은 선거기간중에 5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체는 3인을 넘을 수 없다.

제145조제2항중 “中央黨·黨支部·地區黨 또는 區·市·郡黨連絡所”를 “중앙당 및 시·도당”으로 한다.

제146조제2항 후단중 “이 경우 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地域區市·道議員選舉 및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마다”를 “다만,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로 한다.

제1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9항중 “投票事務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가”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투표사무원을”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학교·관공서 및 공공기관·단체의 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사용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제148조제1항중 “7日부터 3日間”을 “6일부터 2일간”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10日”을 “9일”로 하며, 동조제6항중 “第6項”을 “제7항”으로 한다.

제149조제2항중 “11日”을 “10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第4項 내지 第

6項을”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제150조제1항중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151조제2항중 “投票區마다”를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로 한다.

제152조제1항중 “각 投票區마다 공고”를 “공고”로 한다.

제153조제2항중 “選舉人名簿確定日の 다음날”을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로 한다.

제154조제1항중 “10일”을 “9일”로 한다.

제155조제1항 및 동조제5항중 “오후 6시”를 각각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로 한다.

제157조제1항중 “署名 또는 拇印하고, 投票用紙 1枚를 받아야 한다.”를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부하되”를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로 하며, 동조제4항중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과 投票參觀人の 앞에서 番號紙를 떼어 番號紙函에 넣은 다음 記票所”를 “기표소”로,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하고, 동조제6항중 “6歲미만”을 “초등학생 이하”로, “投票所”를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58조제1항중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제6항 중 “捺印方法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巡廻投票”를 “날인방법”으로 한다.

제161조제2항중 “2人(大統領選舉에 있어서는 候補者마다 4人)”을 “2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12人(選舉人名簿가 分綴되는 投票區에 있어서는 그 分綴數마다 2人을 더한 數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12인”으로, “6人”을 각각 “4인”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해당하는 者 또는 候補者”를 “해당하는 자·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로 하고, 동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162조제2항중 “9日”을 “8일”로 한다.

제167조제2항중 “300미터”를 “100미터”로 한다.

제17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3항의 규정은 개표소에 준용한다.

제17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②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175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때에는 選舉區單位로 投票函의 到着順位에 따라 開票한다.”를 “경우에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한다.”로 한다.

제176조제2항중 “오후 6시”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로 한다.

제178조제2항중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179조제1항제6호중 “候補者(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를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181조제2항중 “참여하는 政黨은 8人”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으로, “4人”을 “3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12人 ”을 “12인(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으로 하며, 동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184조본문중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185조제1항중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大統領選舉”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하고, 동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比例代表國會議員의 議席配分과 관련있는 國會議員選舉”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한다.

③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집계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의석을 배분한다.

②제1항의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비례대표국회의원의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이하 이 조에서 “의석정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

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 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⑤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전국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의석정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⑦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

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의 규정은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190조제9항중 “제8항 및 제9항”을 “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194조제4항 전단중 “제195조제1호 및 제2호 전단(제188조제4항 후단의 경우를 제외한다)·제196조 또는 제198조의 사유로 인한 選舉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選舉에서의 득표수와 再選舉 등”을 “제198조의 사유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선거에서의 득표수와 재투표”로, “議席定數”를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로 하고, 동항 후단중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89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195조 각호외의 부분중 “再選舉(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地域區國會議員選舉를 말한다)”를 “재선거”로 하고, 동조제1호중 “당해 選舉區(地域區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당해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를 “당해 선거구”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제200조(보궐선거)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제197조제3항중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合黨전 政黨이 제출한 候補者名簿중 하나를 추천하여야 한다.”를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합당전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할 수 없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로 하며, 동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89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190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의석을 재배분하고, 그 재배분에서 제외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⑧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실시한 때의 의석 재배분 및 당선인결정에 있어서는 제19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8조제1항중 “選舉區(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를 “선거구”로 하고, 동조제2항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政黨이 추천한 候補者(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候補者名

簿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를 “정당이 있는 경우”로 한다.

제199조중 “第1項 및 第2項 但書”를 “제1항”으로 한다.

제20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그만두었으나 후보자등록신청시까지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원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01조제6항중 “第3項 및 第5項”을 “제3항”으로 한다.

제203조제3항 단서중 “木曜日”을 “토요일”로 한다.

제208조를 삭제한다.

제209조중 “候補者 또는 그 配偶者나 演說員은”을 “후보자·연설원 또는 사회자는”으로 한다.

제214조중 “第175條(開票開始)第1項 및 第2項”을 “제175조(개표개시)제2항”으로, “4개”를 “8개”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호중 “候補者の”를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로 한다.

제237조제3항중 “演說會場, 演說・對談場所”를 “연설·대담장소”로 한다.

제240조제3항중 “第64條”를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13항의 후보자정

보공개자료·제64조”로, “小型印刷物·第75條(合同演說會)의 告知放送
이나 告知壁報”를 “소형인쇄물”로, “발송·방송”을 “발송”으로 한다.

제241조제1항중 “300미터”를 “100미터”로 한다.

제244조중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舉事務에 종사하는
者(投票事務員·不在者投票事務員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나 參觀
人을”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사이버선
거부정감시단원, 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로, “投票와 開票에 관한 設備 또는
選舉人名簿 기타 選舉에 관한 書類나 選舉에 관한 印章을 硃류”를 “선
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
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손괴”로 한다.

제245조제2항중 “演說會場, 演說·對談場所”를 “연설·대담장소”로 한
다.

제247조제1항중 “署名”을 “서명·날인”으로 한다.

제250조제1항중 “(初·中等教育法 및 高等教育法에서 인정하는 正規學
歷외의 學歷을 게재하는 경우와 正規學歷을 게재하는 때에 卒業 또는
修了당시의 學校名·修學期間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및 正規學歷에
준하는 外國의 教育課程을 履修한 學歷을 게재하는 때에 그 教育課程
名, 修學期間, 學位를 취득한 때의 取得學位名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를 포함한다)”를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2조제2항중 “第4項 및 第82條의2(公營放送主管 텔레비전 對談・討論會)第8項”을 “제4항”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및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11항 후단[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5조제1항제3호중 “第1項 또는 第2項”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68조(어깨띠)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깨띠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착용하거나 하게 한 자

제25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6호중 “演說會를 개최하거나 演說・對談을 한 者”를 “연설・대담을 한 자”로 하며, 동항제8호중 “第4項 및 第82條의2(公營放送主管 텔레비전 對談・討論會)第8項”을 “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第2項 및 第3項”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第4項”을 “제5항”으로 하며, 동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4호를 삭제하며, 동항제16호중 “거리를 行進하거나”를 “거리행진・인사 또는”으로 한다.

11.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설치하거나 하게 한 자

제25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중 “者 또는 第91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하게 한 者”를 “자”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자의 명칭 등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명시한 자,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동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동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제2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동호라목중 “無所屬候補者 등”을 “무소속후보자”로 하며, 동호마목중 “第82條의3(컴퓨터통신을 이용한 選舉運動)第5項”을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4항”으로 하고, 동호차목중 “演說會, 演說・對談”을 “연설・대담”으로 하며, 동호카목중 “第2項 및 第3項”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호타목중 “演說會場”을 “연설・대담장소”로 하며, 동호하목중 “選舉期間開始日”을 “선거일전 90일”로 하고, 동항제2호다목을 삭제하며, 동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제25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56조제3항제6호중 “第141條(黨員集會의 제한)의 規定(第2項 및 第4
項을 제외한다)”를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1항 및 제4항(철거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으로 하고, 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
각 삭제하며,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장 또는
유급사무직원을 둔 자
제256조제4항제2호중 “第5項”을 “제5항[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
치)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중 “第5項 本文”을 “제6항”으로, “同條
第6項”을 “동조제7항”으로 하고, 동항제7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8호중 “第7項 내지 第9項”을 “제7항 및 제9항”으로 하고, 동조제
5항을 삭제한다.

2의2.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
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57조제1항제2호중 “第4項 및 第82條의2(公營放送主管 텔레비전 對
談・討論會)第8項”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포함한다)”를 “포

함한다)·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寄附를 받은 者”를 “기부를 받은 자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58조제1항제1호중 “第122條(選舉費用制限額등의 公告)”를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로 하고, 동항제2호중 “허위로 제출한 때”를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하게 한 때”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34조(자료제출요구등)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0조(양벌규정) 정당·회사 기타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61조제4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항(중전의 제4항)중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選舉管理委員會(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 한다)가 過

怠料處分對象者”를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대상자”으로, “기타의 者인 경우에는 그 違反者에게 부과하며”를 “기타의 자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로, 제7항(종전의 제5항)중 “第4項”을 “제6항”으로 하며, 제8항(종전의 제6항)중 “第4項”을 “제6항”으로, “第5項”을 “제7항”으로 하고, 제9항(종전의 제7항)중 “第5項 또는 第6項”을 “제7항 또는 제8항”으로 한다.

⑤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1.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2. 입당의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3.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기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개최하거나 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또는 후보자가 참석한 모임·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4.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된 자로부터 야유회 ·
관광모임 · 체육대회 ·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 · 물품 · 음
식물을 제공받은 자
5.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
· 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자
6.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제2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
고, 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마목을 삭제하며, 제3항(종전의 제2항)제2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한다.

1. 제70조(방송광고)제3항 ·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10항 · 제
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3항[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73조(경력방송)
제1항(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한한다) 및
제2항 · 제272조의3(통신관련선거범죄의 조사)제3항 또는 제275조

(선거운동의 제한·중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사.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3항[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제6항 및 제173조(개표소)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협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261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다목을 삭제하고, 동항제2호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동항제2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라목중 “者”를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 하고, 동항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다목 및 라목중 “告知壁報와 標識”를 각각 “표지”로 하고, 동항제4호라목중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多數人이 왕래하는 場所 또는 공개된 場所가 아닌 場所에서 개최하거나”를 “제2항에 규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당원집회를 개최하거나”로 하며, 동항제4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한다.

나.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바. 제147조제9항, 제148조제5항 또는 제174조(개표사무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해
태한 자

제262조의2 및 제26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①선거범죄[제16장 벌칙에 규
정된 죄(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
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
죄신고자등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 제7조(인적 사항의 기
재생략),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및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점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각급선거관리위원회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범
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3조중 “第122條(選舉費用制限額 등의 公告)”를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로, “選舉事務長 또는 選舉事務所의 會計責任者가 懲役刑”을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5조중 “選舉事務長・選舉事務所의 會計責任者 또는 候補者”를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第234條(當選無效誘導罪) 또는 第257條(寄附行爲의 금지제한등 違反罪)第1項중 寄附行爲를 한 罪를 범함으로 인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

은 때”을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제1항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는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및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된 때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당해 정당·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정당·후

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66조제2항중 “者는”을 “자(그 기소후 확정판결전에 사직한 자를 포함한다)는”으로 한다

제268조중 “6月”을 “6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로 하고, “犯人이 逃避한 때에는”을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36조(회계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죄의 공소시효는 그 보존기간만료일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제2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0조의2(피고인의 출정) ①선거법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1조제3항중 “第4項”을 “제6항”으로 한다.

제272조의2제1항중 “第18條(選舉權이 없는 者)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選舉犯”을 “선거범죄”로, “候補者와 選舉事務長・選舉連絡所長 및”을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금품・響應 제공과 관련된 選舉犯罪”를 “선거범죄”로 하며, 동조제4항중 “금품・響應제공의 選舉犯罪”를 “선거범죄”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거기간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제27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를 포함한다)·주민등록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이용기간·이용요금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설치대수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77조제1항 및 제2항중 “당해 選舉의 寄附行爲制限期間開始日”을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로 하고, 동조제1항중 “選舉期間開始日전(第2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당해 選舉의 寄附行爲制限期間開始日전) 60日”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로 하며, 동조제2항중 “選舉期間開始日전(第1項第2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당해 選舉의 寄附行爲制限期間開始日전) 60日”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로 한다.

제277조의2조제1항중 “시기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를 “기간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지급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공무수행중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보상금의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후 20일 이내에 설치·운영한다.

제3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 법 시행후 20일 이내에 설치·운영한다.

제4조(선거부정감시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의 규정에 의한 선거부정감시단은 동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0일 이내에 둔다.

제5조(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제10조의3(사이버선거부정

감시단)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0일 이내에 둔다.

제6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7조(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2004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를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선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선거일은 제34조(선거일)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공무원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번에 분구 및 통·폐합 조정된 선거구(구역경계를 조정한 경기 용인의 갑·을, 인천 부평구 갑·을 선거구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10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는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11조(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인터넷언론사는 이 법 시행후 30일이내에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등의 실명확인)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정당·정책의 신문광고의 횟수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37조(정당·정책의 신문광고등의 제한)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당·정책의 신문광고의 횟수를 산정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신문광고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13조(정당·정책의 방송연설의 횟수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37조의2(정당·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정책의 방송연설의 횟수를 산정하는 때에는 이 법 시행전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방송한 방송연설의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그 횟수가 2회를 넘는 경우에는 2회로 본다.

제14조(당선무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및 제265조(선거사

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5조(당선무효된 자의 비용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제1항의 신설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6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268조(공소시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제6항제2호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하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제4항제2호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하며,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제3항제2호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別表 1] <改正 1995·8·4, 1996·2·6, 2000·2·16, 2001·10·25 헌법불합치 결정, 2004·2·>

國會議員地域選舉區區域表（地域區：243）

選 舉 區 名	選 舉 區 域
서울 특별시 (地域區：48)	
鍾 路 區 選 舉 區	鍾路區 一圓
中 區 選 舉 區	中區 一圓
龍 山 區 選 舉 區	龍山區 一圓
城 東 區 甲 選 舉 區	鷹峰洞, 金湖1街洞, 金湖2街洞, 金湖3街洞, 金湖4街洞, 玉水第1洞, 玉水第2洞, 聖水1街第1洞, 聖水1街第2洞, 聖水2街第1洞, 聖水2街第3洞
城 東 區 乙 選 舉 區	往十里第1洞, 往十里第2洞, 道詵洞, 馬場洞, 沙斤洞, 杏堂第1洞, 杏堂第2洞, 松亭洞, 龍踏洞
廣 津 區 甲 選 舉 區	中谷第1洞, 中谷第2洞, 中谷第3洞, 中谷第4洞, 陵洞, 九宜第2洞, 廣壯洞, 君子洞
廣 津 區 乙 選 舉 區	九宜第1洞, 九宜第3洞, 紫陽第1洞, 紫陽第2洞, 紫陽第3洞, 老遊第1洞, 老遊第2洞, 華陽洞
東 大 門 區 甲 選 舉 區	新設洞, 龍頭第1洞, 龍頭第2洞, 祭基第1洞, 祭基第2洞, 清涼里第1洞, 清涼里第2洞, 回基洞, 徽慶第1洞, 徽慶第2洞, 里門第1洞, 里門第2洞, 里門第3洞
東 大 門 區 乙 選 舉 區	典農第1洞, 典農第2洞, 典農第3洞, 典農第4洞, 踏十里第1洞, 踏十里第2洞, 踏十里第3洞, 踏十里第4洞, 踏十里第5洞, 長安第1洞, 長安第2洞, 長安第3洞, 長安第4洞
中 浪 區 甲 選 舉 區	面牧第1洞, 面牧第2洞, 面牧第3洞, 面牧第4洞, 面牧第5洞, 面牧第6洞, 面牧第7洞, 面牧第8洞, 上鳳第2洞, 忘憂第3洞
中 浪 區 乙 選 舉 區	上鳳第1洞, 中和第1洞, 中和第2洞, 中和第3洞, 墨第1洞, 墨第2洞, 忘憂第1洞, 忘憂第2洞, 新內第1洞, 新內第2洞
城 北 區 甲 選 舉 區	城北第1洞, 城北第2洞, 東小門洞, 三仙第1洞, 三仙第2洞, 東仙第1洞, 東仙第2洞, 敦岩第2洞, 安岩洞, 普門洞, 貞陵第1洞, 貞陵第2洞, 貞陵第3洞, 貞陵第4洞, 吉音第1洞, 吉音第2洞
城 北 區 乙 選 舉 區	敦岩第1洞, 吉音第3洞, 鍾岩第1洞, 鍾岩第2洞, 月谷第1洞, 月谷第2洞, 月谷第3洞, 月谷第4洞, 上月谷洞, 長位第1洞, 長位第2洞, 長位第3洞, 石串第1洞, 石串第2洞
江 北 區 甲 選 舉 區	樊第1洞, 樊第2洞, 水踰第1洞, 水踰第2洞, 水踰第3洞, 水踰第4洞, 水踰第5洞, 水踰第6洞
江 北 區 乙 選 舉 區	彌阿第1洞, 彌阿第2洞, 彌阿第3洞, 彌阿第4洞, 彌阿第5洞, 彌阿第6·7洞, 彌阿第8洞, 彌阿第9洞, 樊第3洞
道 峰 區 甲 選 舉 區	雙門第1洞, 雙門第3洞, 倉第1洞, 倉第2洞, 倉第3洞, 倉第4洞, 倉第5洞
道 峰 區 乙 選 舉 區	雙門第2洞, 雙門第4洞, 放鶴第1洞, 放鶴第2洞, 放鶴第3洞, 放鶴第4洞, 道峰第1洞, 道峰第2洞

選 舉 區 名	選 舉 區 域
蘆 原 區 甲 選 舉 區	月溪第1洞, 月溪第2洞, 月溪第3洞, 月溪第4洞, 孔陵第1洞, 孔陵第2洞, 孔陵第3洞
蘆 原 區 乙 選 舉 區	下溪第1洞, 下溪第2洞, 中溪本洞, 中溪第1洞, 中溪第2洞, 中溪第3洞, 中溪第4洞, 上溪第6洞, 上溪第7洞
蘆 原 區 丙 選 舉 區	上溪第1洞, 上溪第2洞, 上溪第3洞, 上溪第4洞, 上溪第5洞, 上溪第8洞, 上溪第9洞, 上溪第10洞
恩 平 區 甲 選 舉 區	碌磻洞, 鷹岩第1洞, 鷹岩第2洞, 鷹岩第3洞, 鷹岩第4洞, 新寺第1洞, 新寺第2洞, 繪山洞, 水色洞
恩 平 區 乙 選 舉 區	佛光第1洞, 佛光第2洞, 佛光第3洞, 葛峴第1洞, 葛峴第2洞, 龜山洞, 大棗洞, 驛村第1洞, 驛村第2洞, 津寬內洞, 津寬外洞
西 大 門 區 甲 選 舉 區	忠正路洞, 天然洞, 北阿峴第1洞, 北阿峴第2洞, 北阿峴第3洞, 大新洞, 滄川洞, 延禧第1洞, 延禧第2洞, 延禧第3洞, 弘濟第1洞, 弘濟第2洞, 弘濟第4洞
西 大 門 區 乙 選 舉 區	弘濟第3洞, 弘恩第1洞, 弘恩第2洞, 弘恩第3洞, 南加佐第1洞, 南加佐第2洞, 北加佐第1洞, 北加佐第2洞
麻 浦 區 甲 選 舉 區	阿峴第1洞, 阿峴第2洞, 阿峴第3洞, 孔德第1洞, 孔德第2洞, 新孔德洞, 桃花第1洞, 桃花第2洞, 龍江洞, 大興洞, 鹽里洞, 老姑山洞, 新水洞
麻 浦 區 乙 選 舉 區	倉前洞, 上水洞, 西橋洞, 東橋洞, 合井洞, 望遠第1洞, 望遠第2洞, 延南洞, 城山第1洞, 城山第2洞, 上岩洞
陽 川 區 甲 選 舉 區	木第1洞, 木第2洞, 木第3洞, 木第4洞, 木第5洞, 木第6洞, 新亭第1洞, 新亭第2洞, 新亭第6洞, 新亭第7洞
陽 川 區 乙 選 舉 區	新月第1洞, 新月第2洞, 新月第3洞, 新月第4洞, 新月第5洞, 新月第6洞, 新月第7洞, 新亭第3洞, 新亭第4洞, 新亭第5洞
江 西 區 甲 選 舉 區	登村第2洞, 禾谷本洞, 禾谷第1洞, 禾谷第2洞, 禾谷第3洞, 禾谷第4洞, 禾谷第5洞, 禾谷第6洞, 禾谷第7洞, 禾谷第8洞, 鉢山第1洞, 鉢山第2洞
江 西 區 乙 選 舉 區	鹽倉洞, 登村第1洞, 登村第3洞, 加陽第1洞, 加陽第2洞, 加陽第3洞, 空港洞, 傍花第1洞, 傍花第2洞, 傍花第3洞
九 老 區 甲 選 舉 區	高尺第1洞, 高尺第2洞, 開峰第1洞, 開峰第2洞, 開峰第3洞, 開峰本洞, 梧柳第1洞, 梧柳第2洞, 水宮洞
九 老 區 乙 選 舉 區	新道林洞, 九老第1洞, 九老第2洞, 九老第3洞, 九老第4洞, 九老第5洞, 九老第6洞, 九老本洞, 加里峰第1洞, 加里峰第2洞
衿 川 區 選 舉 區	衿川區 一圓
永 登 浦 區 甲 選 舉 區	永登浦第1洞, 永登浦第2洞, 永登浦第3洞, 堂山第1洞, 堂山第2洞, 道林第1洞, 道林第2洞, 文來第1洞, 文來第2洞, 楊坪第1洞, 楊坪第2洞, 新吉第2洞, 新吉第3洞
永 登 浦 區 乙 選 舉 區	汝矣洞, 新吉第1洞, 新吉第4洞, 新吉第5洞, 新吉第6洞, 新吉第7洞, 大林第1洞, 大林第2洞, 大林第3洞

選 舉 區 名	選 舉 區 域
銅 雀 區 甲 選 舉 區	鷺梁津第1洞, 鷺梁津第2洞, 上道第2洞, 上道第3洞, 上道第4洞, 本洞, 大方洞, 新大方第1洞, 新大方第2洞
銅 雀 區 乙 選 舉 區	上道第1洞, 上道第5洞, 黑石第1洞, 黑石第2洞, 黑石第3洞, 銅雀洞, 舍堂第1洞, 舍堂第2洞, 舍堂第3洞, 舍堂第4洞, 舍堂第5洞
冠 岳 區 甲 選 舉 區	奉天本洞, 奉天第1洞, 奉天第2洞, 奉天第3洞, 奉天第4洞, 奉天第5洞, 奉天第6洞, 奉天第7洞, 奉天第8洞, 奉天第9洞, 奉天第10洞, 奉天第11洞, 南峴洞, 新林第5洞
冠 岳 區 乙 選 舉 區	新林本洞, 新林第1洞, 新林第2洞, 新林第3洞, 新林第4洞, 新林第6洞, 新林第7洞, 新林第8洞, 新林第9洞, 新林第10洞, 新林第11洞, 新林第12洞, 新林第13洞
瑞 草 區 甲 選 舉 區	蠶院洞, 盤浦本洞, 盤浦第1洞, 盤浦第2洞, 盤浦第3洞, 盤浦第4洞, 方背本洞, 方背第1洞, 方背第4洞
瑞 草 區 乙 選 舉 區	瑞草第1洞, 瑞草第2洞, 瑞草第3洞, 瑞草第4洞, 方背第2洞, 方背第3洞, 良才第1洞, 良才第2洞, 內谷洞
江 南 區 甲 選 舉 區	新沙洞, 論峴第1洞, 論峴第2洞, 狎鷗亭第1洞, 狎鷗亭第2洞, 清潭第1洞, 清潭第2洞, 三成第1洞, 三成第2洞, 驛三第1洞, 驛三第2洞, 道谷第1洞, 道谷第2洞
江 南 區 乙 選 舉 區	大峙第1洞, 大峙第2洞, 大峙第3洞, 大峙第4洞, 開浦第1洞, 開浦第2洞, 開浦第3洞, 開浦第4洞, 逸院本洞, 逸院第1洞, 逸院第2洞, 水西洞, 細谷洞
松 坡 區 甲 選 舉 區	風納第1洞, 風納第2洞, 芳荑第1洞, 芳荑第2洞, 五輪洞, 松坡第1洞, 松坡第2洞, 蠶室第4洞, 蠶室第6洞
松 坡 區 乙 選 舉 區	石村洞, 三田洞, 可樂第1洞, 文井第2洞, 蠶室本洞, 蠶室第1洞, 蠶室第2洞, 蠶室第3洞, 蠶室第5洞, 蠶室第7洞
松 坡 區 丙 選 舉 區	巨餘第1洞, 巨餘第2洞, 馬川第1洞, 馬川第2洞, 梧琴洞, 可樂本洞, 可樂第2洞, 文井第1洞, 長旨洞
江 東 區 甲 選 舉 區	江一洞, 上一洞, 明逸第1洞, 明逸第2洞, 高德第1洞, 高德第2洞, 岩寺第1洞, 岩寺第2洞, 岩寺第3洞, 岩寺第4洞, 吉第1洞, 吉第2洞
江 東 區 乙 選 舉 區	千戶第1洞, 千戶第2洞, 千戶第3洞, 千戶第4洞, 城內第1洞, 城內第2洞, 城內第3洞, 遁村第1洞, 遁村第2洞
釜 山 廣 域 市 (地域區：18)	
中 區 東 區 選 舉 區	中區 一圓, 東區 一圓
西 區 選 舉 區	西區 一圓
影 島 區 選 舉 區	影島區 一圓
釜 山 鎮 區 甲 選 舉 區	釜田第1洞, 凡田洞, 蓮池洞, 草邑洞, 楊亭第1洞, 楊亭第2洞, 釜岩第1洞, 釜岩第3洞, 堂甘第1洞, 堂甘第2洞, 堂甘第3洞, 堂甘第4洞

選 舉 區 名	選 舉 區 域
釜 山 鎮 區 乙 選 舉 區	釜田第2洞, 田浦第1洞, 田浦第2洞, 田浦第3洞, 伽倻第1洞, 伽倻第2洞, 伽倻第3洞, 開琴第1洞, 開琴第2洞, 開琴第3洞, 凡川第1洞, 凡川第2洞, 凡川第4洞
東 萊 區 選 舉 區	東萊區 一圓
南 區 甲 選 舉 區	大淵第1洞, 大淵第2洞, 大淵第3洞, 大淵第4洞, 大淵第5洞, 大淵第6洞, 門岷第1洞, 門岷第2洞, 門岷第3洞, 門岷第4洞
南 區 乙 選 舉 區	龍湖第1洞, 龍湖第2洞, 龍湖第3洞, 龍湖第4洞, 龍塘洞, 戡蠻第1洞, 戡蠻第2洞, 牛岩第1洞, 牛岩第2洞
北 區 江 西 區 甲 選 舉 區	北區 龜浦第1洞, 龜浦第2洞, 龜浦第3洞, 德川第1洞, 德川第3洞, 萬德第1洞, 萬德第2洞, 萬德第3洞
北 區 江 西 區 乙 選 舉 區	北區 金谷洞, 華明第1洞, 華明第2洞, 華明第3洞, 德川第2洞 江西區 一圓
海雲臺區機張郡甲選舉區	海雲臺區 佑第1洞, 佑第2洞, 中第1洞, 中第2洞, 盤如第1洞, 盤如第2洞, 盤如第3洞, 盤松第1洞, 盤松第2洞, 盤松第3洞, 栽松第1洞, 栽松第2洞
海雲臺區機張郡乙選舉區	海雲臺區 佐第1洞, 佐第2洞, 佐第3洞, 佐第4洞, 松亭洞 機張郡 一圓
沙 下 區 甲 選 舉 區	槐亭第1洞, 槐亭第2洞, 槐亭第3洞, 槐亭第4洞, 堂里洞, 下端第1洞, 下端第2洞
沙 下 區 乙 選 舉 區	新平第1洞, 新平第2洞, 長林第1洞, 長林第2洞, 多大第1洞, 多大第2洞, 舊平洞, 甘川第1洞, 甘川第2洞
金 井 區 選 舉 區	金井區 一圓
蓮 堤 區 選 舉 區	蓮堤區 一圓
水 營 區 選 舉 區	水營區 一圓
沙 上 區 選 舉 區	沙上區 一圓
大 邱 廣 域 市 (地域區：12)	
中 區 南 區 選 舉 區	中區 一圓, 南區 一圓
東 區 甲 選 舉 區	新岩1洞, 新岩2洞, 新岩3洞, 新岩4洞, 新岩5洞, 新川1・2洞, 新川3洞, 新川4洞, 孝睦1洞, 孝睦2洞
東 區 乙 選 舉 區	道坪洞, 不老鳳舞洞, 枝底洞, 東村洞, 芳村洞, 解顏洞, 安心1洞, 安心2洞, 安心3・4洞, 公山洞
西 區 選 舉 區	西區 一圓
北 區 甲 選 舉 區	古城洞, 七星洞, 砧山1洞, 砧山2洞, 砧山3洞, 魯院1・2洞, 魯院3洞, 山格1洞, 山格2洞, 山格3洞, 山格4洞, 大賢1洞, 大賢2洞
北 區 乙 選 舉 區	伏賢1洞, 伏賢2洞, 檢丹洞, 無怠助也洞, 關門洞, 太田1洞, 太田2洞, 鳩岩洞, 觀音洞, 邑內洞, 東川洞

選 舉 區 名	選 舉 區 域
壽 城 區 甲 選 舉 區	泛魚1洞, 泛魚2洞, 泛魚3洞, 泛魚4洞, 晚村1洞, 晚村2洞, 晚村3洞, 黃金1洞, 黃金2洞, 孤山1洞, 孤山2洞, 孤山3洞
壽 城 區 乙 選 舉 區	壽城1街洞, 壽城2・3街洞, 壽城4街洞, 中洞, 上洞, 巴洞, 斗山洞, 池山1洞, 池山2洞, 凡勿1洞, 凡勿2洞
達 西 區 甲 選 舉 區	竹田洞, 長基洞, 龍山1洞, 龍山2洞, 梨谷1洞, 梨谷2洞, 新塘洞
達 西 區 乙 選 舉 區	月城1洞, 月城2洞, 辰泉洞, 上仁1洞, 上仁2洞, 上仁3洞, 桃源洞
達 西 區 丙 選 舉 區	聖堂1洞, 聖堂2洞, 頭流1洞, 頭流2洞, 頭流3洞, 本里洞, 甘三洞, 松峴1洞, 松峴2洞, 本洞
達 城 郡 選 舉 區	達城郡 一圓
仁 川 廣 域 市(地域區：12)	
中 區 東 區 襄 津 郡 選 舉 區	中區 一圓, 東區 一圓, 襄津郡 一圓
南 區 甲 選 舉 區	道禾1洞, 道禾2洞, 道禾3洞, 朱安1洞, 朱安2洞, 朱安3洞, 朱安4洞, 朱安5洞, 朱安6洞, 朱安7洞, 朱安8洞
南 區 乙 選 舉 區	崇義1洞, 崇義2洞, 崇義3洞, 崇義4洞, 龍現1洞, 龍現2洞, 龍現3洞, 龍現4洞, 龍現5洞, 鶴翼1洞, 鶴翼2洞, 文鶴洞, 官校洞
延 壽 區 選 舉 區	延壽區 一圓
南 洞 區 甲 選 舉 區	九月1洞, 九月2洞, 九月3洞, 九月4洞, 間石1洞, 間石2洞, 間石4洞, 南村桃林洞, 論峴古棧洞
南 洞 區 乙 選 舉 區	間石3洞, 萬壽1洞, 萬壽2洞, 萬壽3洞, 萬壽4洞, 萬壽5洞, 萬壽6洞, 長壽西昌洞
富 平 區 甲 選 舉 區	富平1洞, 富平2洞, 富平3洞, 富平4洞, 富平5洞, 富平6洞, 富開1洞, 富開2洞, 日新洞, 十井1洞, 十井2洞, 山谷3洞
富 平 區 乙 選 舉 區	山谷1洞, 山谷2洞, 山谷4洞, 清川1洞, 清川2洞, 葛山1洞, 葛山2洞, 三山洞, 富開3洞
桂 陽 區 甲 選 舉 區	曉星1洞, 曉星2洞, 鵲田1洞, 鵲田2洞, 鵲田瑞雲洞
桂 陽 區 乙 選 舉 區	桂山1洞, 桂山2洞, 桂山3洞, 桂山4洞, 桂陽1洞, 桂陽2洞
西 區 江 華 郡 甲 選 舉 區	西區 黔岩景西洞, 連喜洞, 佳亭1洞, 佳亭2洞, 佳亭3洞, 新峴元倉洞, 石南1洞, 石南2洞, 石南3洞, 佳佐1洞, 佳佐2洞, 佳佐3洞, 佳佐4洞
西 區 江 華 郡 乙 選 舉 區	西區 黔丹1洞, 黔丹2洞 江華郡 一圓
光 州 廣 域 市(地域區：7)	
東 區 選 舉 區	東區 一圓
西 區 甲 選 舉 區	良洞, 良3洞, 農城1洞, 農城2洞, 光川洞, 柳德洞, 治平洞, 尙武1洞, 花亭1洞, 花亭2洞
西 區 乙 選 舉 區	花亭3洞, 花亭4洞, 西倉洞, 金湖洞, 楓岩洞, 尙武2洞

選 舉 區 名	選 舉 區 域
南 區 選 舉 區	南區 一圓
北 區 甲 選 舉 區	中興1洞, 中興2洞, 中興3洞, 中央洞, 新安洞, 牛山洞, 豐鄉洞, 文化洞, 文興1洞, 文興2洞, 斗岩1洞, 斗岩2洞, 斗岩3洞, 石谷洞
北 區 乙 選 舉 區	林洞, 龍鳳洞, 雲岩1洞, 雲岩2洞, 雲岩3洞, 東林洞, 三角洞, 日谷洞, 梅谷洞, 梧峙1洞, 梧峙2洞, 建國洞
光 山 區 選 舉 區	光山區 一圓
大 田 廣 域 市 (地域區：6)	
東 區 選 舉 區	東區 一圓
中 區 選 舉 區	中區 一圓
西 區 甲 選 舉 區	福守洞, 桃馬1洞, 桃馬2洞, 正林洞, 邊洞, 槐亭洞, 佳狀洞, 內洞, 佳水院洞, 關睢洞, 杞城洞
西 區 乙 選 舉 區	龍汶洞, 炭坊洞, 三川洞, 屯山1洞, 屯山2洞, 葛馬1洞, 葛馬2洞, 月坪1洞, 月坪2洞, 月坪3洞, 萬年洞
儒 城 區 選 舉 區	儒城區 一圓
大 德 區 選 舉 區	大德區 一圓
蔚 山 廣 域 市 (地域區：6)	
中 區 選 舉 區	中區 一圓
南 區 甲 選 舉 區	新亭1洞, 新亭2洞, 新亭3洞, 新亭4洞, 新亭5洞, 無去1洞, 無去2洞, 玉洞
南 區 乙 選 舉 區	達洞, 三山洞, 也音1長生浦洞, 也音2洞, 也音3洞, 仙岩洞
東 區 選 舉 區	東區 一圓
北 區 選 舉 區	北區 一圓
蔚 州 郡 選 舉 區	蔚州郡 一圓
京 畿 道 (地域區：49)	
水 原 市 長 安 區 選 舉 區	水原市 長安區 一圓
水 原 市 勸 善 區 選 舉 區	水原市 勸善區 一圓
水 原 市 八 達 區 選 舉 區	水原市 八達區 一圓
水 原 市 靈 通 區 選 舉 區	水原市 靈通區 一圓
城 南 市 壽 井 區 選 舉 區	城南市 壽井區 一圓
城 南 市 中 院 區 選 舉 區	城南市 中院區 一圓

選 舉 區 名	選 舉 區 域
城 南 市 盆 唐 區 甲 選 舉 區	藪內1洞, 藪內2洞, 書峴1洞, 書峴2洞, 二梅1洞, 二梅2洞, 野塔1洞, 野塔2洞, 野塔3洞, 板橋洞, 雲中洞
城 南 市 盆 唐 區 乙 選 舉 區	金谷洞, 藪內3洞, 亭子1洞, 亭子2洞, 亭子3洞, 盆唐洞, 九美洞
議 政 府 市 甲 選 舉 區	議政府1洞, 議政府2洞, 議政府3洞, 虎院1洞, 虎院2洞, 佳陵1洞, 佳陵2洞, 佳陵3洞, 綠楊洞
議 政 府 市 乙 選 舉 區	長岩洞, 新谷1洞, 新谷2洞, 松山1洞, 松山2洞, 自金洞
安 養 市 萬 安 區 選 舉 區	安養市 萬安區 一圓
安 養 市 東 安 區 甲 選 舉 區	飛山1洞, 飛山2洞, 飛山3洞, 復興洞, 達安洞, 冠陽1洞, 冠陽2洞, 富林洞
安 養 市 東 安 區 乙 選 舉 區	坪村洞, 坪安洞, 貴仁洞, 虎溪1洞, 虎溪2洞, 虎溪3洞, 범계洞, 新村洞, 葛山洞
富 川 市 遠 美 區 甲 選 舉 區	深谷1洞, 深谷2洞, 深谷3洞, 遠美1洞, 遠美2洞, 素砂洞, 驛谷1洞, 驛谷2洞, 春衣洞, 陶唐洞
富 川 市 遠 美 區 乙 選 舉 區	若大洞, 中洞, 中1洞, 中2洞, 中3洞, 中4洞, 上洞, 上1洞, 上2洞, 上3洞,
富 川 市 素 砂 區 選 舉 區	富川市 素砂區 一圓
富 川 市 梧 亭 區 選 舉 區	富川市 梧亭區 一圓
光 明 市 甲 選 舉 區	光明1洞, 光明2洞, 光明3洞, 光明4洞, 光明5洞, 光明6洞, 光明7洞, 鐵山1洞, 鐵山2洞, 鐵山4洞
光 明 市 乙 選 舉 區	鐵山3洞, 下安1洞, 下安2洞, 下安3洞, 下安4洞, 所下1洞, 所下2洞, 鶴溫洞
平 澤 市 甲 選 舉 區	振威面, 西炭面, 中央洞, 西井洞, 松炭洞, 芝山洞, 松北洞, 新場1洞, 新場2洞, 通伏洞, 細橋洞
平 澤 市 乙 選 舉 區	彭城邑, 安仲邑, 古德面, 梧城面, 青北面, 浦升面, 玄德面, 新平洞, 原平洞, 碑前1洞, 碑前2洞
楊 州 市 東 豆 川 市 選 舉 市 區	楊州市 一圓, 東豆川市 一圓
安 山 市 常 綠 區 甲 選 舉 區	四1洞, 四2洞, 本五1洞, 本五2洞, 本五3洞, 半月洞
安 山 市 常 綠 區 乙 選 舉 區	一洞, 釜谷洞, 月陂洞, 聲浦洞, 安山洞
安 山 市 檀 園 區 甲 選 舉 區	瓦洞, 元谷本洞, 元谷1洞, 元谷2洞, 仙府1洞, 仙府2洞, 仙府3洞

選 舉 區 名	選 舉 區 域
安 山 市 檀 園 區 乙 選 舉 區	古棧1洞, 古棧2洞, 湖水洞, 草芝洞, 大阜洞
高 陽 市 德 陽 區 甲 選 舉 區	舟橋洞, 元新洞, 興道洞, 星沙1洞, 星沙2洞, 高陽洞, 官山洞, 花井1洞, 花井2洞
高 陽 市 德 陽 區 乙 選 舉 區	孝子洞, 神道洞, 昌陵洞, 陵谷洞, 幸州洞, 幸信1洞, 幸信2洞, 幸信3洞, 花田洞, 大德洞
高 陽 市 一 山 區 甲 選 舉 區	食寺洞, 楓山洞, 白石洞, 馬頭1洞, 馬頭2洞, 注葉1洞, 注葉2洞, 獐項1洞, 獐項2洞
高 陽 市 一 山 區 乙 選 舉 區	一山1洞, 一山2洞, 一山3洞, 一山4洞, 炭峴洞, 大化洞, 高峰洞, 松浦洞, 松山洞
儀 旺 市 果 川 市 選 舉 區	儀旺市 一圓, 果川市 一圓
九 里 市 選 舉 區	九里市 一圓
南 楊 州 市 甲 選 舉 區	瓦阜邑, 和道邑, 水洞面, 烏安面, 好坪洞, 坪內洞, 金谷洞, 養正洞
南 楊 州 市 乙 選 舉 區	榛接邑, 眞乾邑, 梧南邑, 別內面, 退溪院面, 陶農洞, 芝錦洞
烏 山 市 選 舉 區	烏山市 一圓
華 城 市 選 舉 區	華城市 一圓
始 興 市 甲 選 舉 區	大也洞, 新川洞, 新峴洞, 銀杏洞, 梅花洞, 牧甘洞, 果林洞, 蓮城洞
始 興 市 乙 選 舉 區	君子洞, 正往本洞, 正往1洞, 正往2洞, 正往3洞, 正往4洞
軍 浦 市 選 舉 區	軍浦市 一圓
河 南 市 選 舉 區	河南市 一圓
坡 州 市 選 舉 區	坡州市 一圓
利 川 市 驪 州 郡 選 舉 區	利川市 一圓, 驪州郡 一圓
龍 仁 市 甲 選 舉 區	器興邑, 蒲谷面, 慕賢面, 南四面, 二東面, 遠三面, 白岩面, 陽智面, 中央洞, 驛三洞, 柳林洞, 東部洞
龍 仁 市 乙 選 舉 區	駒城邑, 豐德川1洞, 豐德川2洞, 竹田1洞, 竹田2洞, 東川洞, 上峴洞, 星福洞
安 城 市 選 舉 區	安城市 一圓
金 浦 市 選 舉 區	金浦市 一圓
廣 州 市 選 舉 區	廣州市 一圓
抱 川 市 漣 川 郡 選 舉 區	抱川市一圓, 漣川郡 一圓
楊 平 郡 加 平 郡 選 舉 區	楊平郡 一圓, 加平郡 一圓
江 原 道 (地域區：8)	
春 川 市 選 舉 區	春川市 一圓
原 州 市 選 舉 區	原州市 一圓
江 陵 市 選 舉 區	江陵市 一圓

選 舉 區 名	選 舉 區 域
東 海 市 三 陟 市 區 選 舉	東海市 一圓, 三陟市 一圓
束 草 市 高 城 郡 襄 陽 郡 區 選 舉	束草市 一圓, 高城郡 一圓, 襄陽郡 一圓
洪 川 郡 橫 城 郡 區 選 舉	洪川郡 一圓, 橫城郡 一圓
太 白 市 寧 越 郡 平 昌 郡 區 旌 善 郡 選 舉	太白市 一圓, 寧越郡 一圓, 平昌郡 一圓, 旌善郡 一圓
鐵 原 郡 華 川 郡 楊 口 郡 區 麟 蹄 郡 選 舉	鐵原郡 一圓, 華川郡 一圓, 楊口郡 一圓, 麟蹄郡 一圓
忠 清 北 道 (地域區：8)	
清 州 市 上 黨 區 區 選 舉	清州市 上黨區 一圓
清 州 市 興 德 區 甲 區 選 舉	社稷第1洞, 社稷第2洞, 司倉洞, 慕忠洞, 山米粉長洞, 秀谷第1洞, 秀谷第2洞, 聖化開新竹林洞
清 州 市 興 德 區 乙 區 選 舉	雲泉新鳳洞, 福臺第1洞, 福臺第2洞, 佳景洞, 鳳鳴第1洞, 鳳鳴第2松亭洞, 江西第1洞, 江西第2洞
忠 州 市 選 舉 區	忠州市 一圓
堤 川 市 丹 陽 郡 區 選 舉	堤川市 一圓, 丹陽郡 一圓
清 原 郡 選 舉 區	清原郡 一圓
報 恩 郡 沃 川 郡 區 永 同 郡 選 舉	報恩郡 一圓, 沃川郡 一圓, 永同郡 一圓
曾 坪 郡 鎭 川 郡 槐 山 郡 區 陰 城 郡 選 舉	曾坪郡一圓, 鎭川郡 一圓, 槐山郡 一圓, 陰城郡 一圓
忠 清 南 道 (地域區：10)	
天 安 市 甲 選 舉 區	木川邑, 豐歲面, 廣德面, 北面, 城南面, 修身面, 竝川面, 東面, 中央洞, 文城洞, 院城1洞, 院城2洞, 鳳鳴洞, 新龍洞, 青龍洞, 新安洞
天 安 市 乙 選 舉 區	成歡邑, 聖居邑, 稷山邑, 笠場面, 星井1洞, 星井2洞, 雙龍1洞, 雙龍2洞, 雙龍3洞, 富城洞
公 州 市 燕 岐 郡 區 選 舉	公州市 一圓, 燕岐郡 一圓
保 寧 市 舒 川 郡 區 選 舉	保寧市 一圓, 舒川郡 一圓
牙 山 市 選 舉 區	牙山市 一圓
瑞 山 市 泰 安 郡 區 選 舉	瑞山市 一圓, 泰安郡 一圓
論 山 市 鷄 龍 市 區 錦 山 郡 選 舉	論山市 一圓, 鷄龍市 一圓, 錦山郡 一圓

選 舉 區 名	選 舉 區 域
扶餘郡 青陽郡 選舉區	扶餘郡 一圓, 青陽郡 一圓
洪城郡 禮山郡 選舉區	洪城郡 一圓, 禮山郡 一圓
唐津郡 選舉區	唐津郡 一圓
全 羅 北 道 (地域區：11개)	
全州市 完山區 甲區 全選	中央洞, 豐南洞, 校洞, 太平洞, 中老松1洞, 中老松2洞, 南老松洞, 東完山洞, 西完山洞, 東棲鶴洞, 西棲鶴洞, 中華山1洞, 中華山2洞, 平和1洞, 平和2洞
全州市 完山區 乙區 全選	西新洞, 三川1洞, 三川2洞, 三川3洞, 孝子1洞, 孝子2洞, 孝子3洞, 孝子4洞
全州市 德津區 全選	全州市 德津區 一圓
群山市 選舉區	群山市 一圓
益山市 甲 選舉區	咸悅邑, 五山面, 黃登面, 咸羅面, 熊浦面, 聖堂面, 龍安面, 龍東面, 中央洞, 平和洞, 南中洞, 慕縣洞, 松鶴洞, 新洞, 仁和洞, 馬洞
益山市 乙 選舉區	朗山面, 望城面, 礪山面, 金馬面, 王宮面, 春浦面, 三箕面, 銅山洞, 永登1洞, 永登2洞, 於陽洞, 八峰洞, 三星洞
井邑市 選舉區	井邑市 一圓
南原市 淳昌郡 南選	南原市 一圓, 淳昌郡 一圓
金堤市 完州郡 選舉區	金堤市 一圓, 完州郡 一圓
鎮安郡 茂朱郡 長水郡 任實郡 選舉區	鎮安郡 一圓, 茂朱郡 一圓, 長水郡 一圓, 任實郡 一圓
高敞郡 扶安郡 高選	高敞郡 一圓, 扶安郡 一圓
全 羅 南 道 (地域區：13)	
木浦市 選舉區	木浦市 一圓
麗水市 甲 選舉區	突山邑, 南面, 三山面, 東門洞, 閑麗洞, 中央洞, 忠武洞, 光林洞, 西崗洞, 大橋洞, 菊洞, 月湖洞, 麗西洞, 文水洞
麗水市 乙 選舉區	召羅面, 栗村面, 華陽面, 華井面, 美坪洞, 屯德洞, 萬德洞, 雙鳳洞, 柿田洞, 麗川洞, 珠三洞, 三日洞, 猫島洞
順天市 選舉區	順天市 一圓
羅州市 和順郡 選舉區	羅州市 一圓, 和順郡 一圓
光陽市 求禮郡 光選	光陽市 一圓, 求禮郡 一圓
潭陽郡 谷城郡 長城郡 選舉區	潭陽郡 一圓, 谷城郡 一圓, 長城郡 一圓
高興郡 寶城郡 選舉區	高興郡 一圓, 寶城郡 一圓

選 舉 區 名	選 舉 區 域
長興郡靈巖郡區 選 舉	長興郡 一圓, 靈巖郡 一圓
康津郡莞島郡區 選 舉	康津郡 一圓, 莞島郡 一圓
海南郡珍島郡區 選 舉	海南郡 一圓, 珍島郡 一圓
務安郡新安郡區 選 舉	務安郡 一圓, 新安郡 一圓
咸平郡靈光郡區 選 舉	咸平郡 一圓, 靈光郡 一圓
慶 尚 北 道 (地域區：15)	
浦項市北區選舉區	浦項市 北區 一圓
浦項市南區鬱陵郡選舉區	浦項市 南區 一圓, 鬱陵郡 一圓
慶州市選舉區	慶州市 一圓
金泉市選舉區	金泉市 一圓
安東市選舉區	安東市 一圓
龜尾市甲選舉區	松亭洞, 元坪1洞, 元坪2洞, 芝山洞, 道良洞, 善州元南洞, 荊谷1洞, 荊谷2洞, 工團1洞, 工團2洞, 廣坪洞, 上毛沙谷洞, 林吳洞, 新坪1洞, 新坪2洞, 飛山洞
龜尾市乙選舉區	善山邑, 高牙邑, 舞乙面, 玉城面, 桃開面, 海平面, 山東面, 長川面, 仁同洞, 眞美洞, 陽浦洞
榮州市選舉區	榮州市 一圓
永川市選舉區	永川市 一圓
尙州市選舉區	尙州市 一圓
聞慶市醴泉郡區 選 舉	聞慶市 一圓, 醴泉郡 一圓
慶山市清道郡區 選 舉	慶山市 一圓, 清道郡 一圓
高靈郡星州郡漆谷郡區 選 舉	高靈郡 一圓, 星州郡 一圓, 漆谷郡 一圓
軍威郡義城郡青松郡區 選 舉	軍威郡 一圓, 義城郡 一圓, 青松郡 一圓
英陽郡盈德郡奉化郡區 蔚珍郡選舉區	英陽郡 一圓, 盈德郡 一圓, 奉化郡 一圓, 蔚珍郡 一圓
慶 尚 南 道 (地域區：17)	
昌原市甲選舉區	東邑, 北面, 大山面, 義昌洞, 八龍洞, 明谷洞, 鳳林洞, 龍池洞
昌原市乙選舉區	盤松洞, 沙巴洞, 上南洞, 中央洞, 加音丁洞, 聖住洞, 熊南洞

選 舉 區 名	選 舉 區 域
馬 山 市 甲 選 舉 區	龜山面, 鎮東面, 鎮北面, 鎮田面, 縣洞, 架浦洞, 月影洞, 文化洞, 半月洞, 中央洞, 玩月洞, 玆山洞, 東西洞, 城湖洞, 校坊洞, 鷺山洞, 午東洞, 合浦洞, 山湖洞
馬 山 市 乙 選 舉 區	內西邑, 檜原1洞, 檜原2洞, 石田1洞, 石田2洞, 檜城洞, 陽德1洞, 陽德2洞, 合城1洞, 合城2洞, 龜岩1洞, 龜岩2洞, 鳳岩洞
晉 州 市 甲 選 舉 區	文山邑, 奈洞面, 井村面, 金谷面, 鳴石面, 大坪面, 水谷面, 望京洞, 江南洞, 七岩洞, 城址洞, 鳳安洞, 平居洞, 新安洞, 二峴洞, 板門洞, 加虎洞
晉 州 市 乙 選 舉 區	晉城面, 一班城面, 二班城面, 寺奉面, 智水面, 大谷面, 琴山面, 集賢面, 美川面, 中央洞, 上鳳東洞, 上鳳西洞, 蓬水洞, 玉峰洞, 上大1洞, 上大2洞, 下大1洞, 下大2洞, 上坪洞, 草長洞
鎮 海 市 選 舉 區	鎮海市 一圓
統 營 市 固 城 郡 選 舉 區	統營市 一圓, 固城郡 一圓
泗 川 市 選 舉 區	泗川市 一圓
金 海 市 甲 選 舉 區	生林面, 上東面, 大東面, 東上洞, 府院洞, 北部洞, 活川洞, 三安洞, 佛岩洞
金 海 市 乙 選 舉 區	進永邑, 長有面, 酒村面, 進禮面, 翰林面, 會峴洞, 內外洞, 七山西部洞
密 陽 市 昌 寧 郡 選 舉 區	密陽市 一圓, 昌寧郡 一圓
巨 濟 市 選 舉 區	巨濟市 一圓
梁 山 市 選 舉 區	梁山市 一圓
宜 寧 郡 咸 安 郡 陝 川 郡 選 舉 區	宜寧郡 一圓, 咸安郡一圓, 陝川郡 一圓
南 海 郡 河 東 郡 選 舉 區	南海郡 一圓, 河東郡 一圓
山 清 郡 咸 陽 郡 居 昌 郡 選 舉 區	山清郡 一圓, 咸陽郡 一圓, 居昌郡 一圓
濟 州 道 (地域區：3)	
濟州市北濟州郡甲選舉區	濟州市 一徒1洞, 一徒2洞, 二徒1洞, 二徒2洞, 三徒1洞, 三徒2洞, 龍潭1洞, 龍潭2洞, 健入洞, 禾北洞, 外都洞, 奉蓋洞, 我羅洞, 吾羅洞, 蓮洞, 老衡洞, 梨湖洞, 道頭洞
濟州市北濟州郡乙選舉區	濟州市 三陽洞, 北濟州郡 一圓
西 歸 浦 市 南 濟 州 郡 選 舉 區	西歸浦市 一圓, 南濟州郡 一圓

신 구조문 대비 표

현행	개정안
第7條(政黨・候補者등의 公正競爭義務) 選舉에 참여하는 政黨・候補者 및 候補者を 위하여 選舉運動을 하는 者는 選舉運動을 함에 있어 이 法을 준수하고 公正하게 競爭하여야 하며, 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の 政見을 支持・宣傳하거나 이를 批判・反對함에 있어 선량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第7條(政黨・候補者등의 公正競爭義務)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

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 [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정당의 당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 설>

⑥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⑦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⑨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①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④인터넷언론사는 제3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

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 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내용·크기·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방송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

<신 설>

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등”이라 한다)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 및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

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방송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 학식과 덕망있는 자중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자를 포함하여 9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에 있어서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

담·토론회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⑨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⑩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第10條(社會團體등의 公明選舉推進活動) ①社會團體등은 選舉不正을 감시하는 등 公明選舉推進活動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團體는 그 名義 또는 그 代表의 名義로 公明選舉推進活動을 할 수 없다.

1.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民運動團體로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2. 法令에 의하여 政治活動이 금지된 團體

3. 候補者, 候補者の 配偶者와 候補者 또는 그 配偶者の 直系尊·卑屬과 兄弟姉妹나 候補者の 直系卑屬 및 兄弟姉妹의 配偶者(이하 “候補者の 家族”이라 한다)가 設立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團體

4. 특정 政黨(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

칙으로 정한다.

第10條(社會團體등의 公明選舉推進活動) ①.....

1. 말한다)

2.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3.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4. 후보자.....

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
서 같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設
立된 團體

5. (생 략)

6. 제8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
과 단체중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② · ③ (생 략)

第10條의2(選舉不正監視團) ①區 ·
市 · 郡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를 실
시하는 때마다 選舉不正을 監視하
기 위하여 選舉期間開始日전 10일
부터 選舉日까지 당해 區 · 市 · 郡
選舉管理委員會에 選舉不正監視團
을 둔다.

②選舉不正監視團은 다음 各號의 1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로서 黨員
이 아닌 中立的이고 공정한 者중에
서 당해 選舉에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이 추천하는 각 3人을 포함한
50人이내로 구성한다.

.....
.....
.....

5. (현행과 같음)

6.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
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② · ③ (현행과 같음)

第10條의2(選舉不正監視團) ①.....
.....
.....선거일전 120일(선
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
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
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②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
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정
당(선거기간전에는 국회에 5인 이
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및 직
전 대통령선거 ·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시 · 도의원선거
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第10條(社會團體등의 公明選舉
推進活動)第1項 但書の 規定에
의한 團體에 소속된 者
2. 第60條(選舉運動을 할 수 없는 者)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選舉運
動을 할 수 없는 者

<신 설>

<신 설>

<신 설>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선거기간
중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각 동수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경우 정당이 추천
하는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수가 전
체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수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수에 해당하는 선거부정감시단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다.

④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감시단을 나누어 조를 편
성·운영하는 때에는 정당이 추천
한 선거부정감시단원의 균형있는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

③~⑤ (생략)

<신설>

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 감시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선거부정감시단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⑥~⑧ (현행 제3항 내지 제5항과 같음)

제10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각각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종류·실시지역 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②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구성한다.

③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제2항 후단·제3항·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준

第18條 (選舉權이 없는 者) ①選舉日
현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는 選舉權이 없다.

1. 2. (생략)

3. 選舉犯으로서, 100萬원 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5年 또는 刑의 執行猶
豫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
된 후 10年을 경과하지 아니하거
나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
行을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免除된 후 10年을 경과하지 아니
한 者(刑이 失効된 者도 포함한
다)

4. 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選舉權이
정지 또는 상실된 者

② (생략)

③ 第2項의 選舉犯과 다른 罪의 競
合犯에 대하여는 刑法 第38條(競合

용한다. 이 경우 “관할구·시·군선
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관리위
원회”로, “선거부정감시단”은 “사이
버선거부정감시단”으로 본다.

第18條 (選舉權이 없는 者) ①……
…….

1. 2.(현행과 같음)

3. 선거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
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규
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
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
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
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
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

4. ……판결 또는 다른 법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

犯과 處罰例)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宣告하여 야 한다.	
第21條(國會議員定數) ①國會議 員定數는 地域區國會議員과 比例代 表國會議員을 합하여 <u>273人</u> 으로 한 다.	第21條(國會議員定數) ①.....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는 <u>최소 3인</u> 으로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第24條(選舉區劃定委員會) ① (생 략) <u><신설></u>	第24條(選舉區劃定委員會) ① (현행과 같음) <u>②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 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 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u>
<u><신설></u>	<u>③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선거 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u>
②~④ (생략)	④~⑥ (현행 제2항 내지 제4항과 같음)
<u><신설></u>	<u>⑦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u>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97條(選舉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舉)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選舉의 選舉期間 및 第198條(天災·地變등으로 인한 再投票)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投票의 기간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大統領選舉는 21日
2. 國會議員選舉와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舉는 15日

③“選舉期間”이라 함은 候補者登錄申請開始日부터 選舉日까지를 말한다.

第34條(選舉日) ①任期滿了에 의한 選舉의 選舉日是 다음 各號와 같다.

1. 大統領選舉는 그 任期滿了日전 70日이후 첫번째 木曜日
2. 國會議員選舉는 그 任期滿了日전 50日이후 첫번째 木曜日
3.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는 그 任期滿了日전 30日이후 첫번째 木曜日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舉일이 國民生活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民俗節 또는 公休日인 때와 選舉日前

<삭 제>

③.....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

第34條(選舉日) ①.....
.....

1.수요일
2.수요일
3.수요일

②.....
.....
.....

日이나 그 다음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木曜日로 한다.

第35條(補闕選舉등의 選舉日) ① (생략)

②補闕選舉・再選舉・増員選舉와 地方自治團體의 設置・廢止・分割 또는 合併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長選舉는 다음 各號에 의한다.

1. 地域區國會議員・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補闕選舉・再選舉, 地方議會議員의 増員選舉는 前年度 10月 1일부터 3月 31일까지의 사이에 그選舉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月중 마지막 木曜日에 실시하고, 4月 1일부터 9月 30일까지의 사이에 그 選舉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月中 마지막 木曜日에 실시한다. 이 경우 選舉日에 관하여는 第34條(選舉日)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2. 地方自治團體의 設置・廢止・分割 또는 合併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長選舉는 그 選舉의 실시사

.....
.....수요일.....

第35條(補闕選舉등의 選舉日)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
.....
.....
.....
.....토요일.....
.....

.....토요일.....
..... 이 경우 선거일 또는 선거일전일이 國民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토요일로 한다.

2.
.....
.....

유가 확정된 때부터 60日이내에 실시하되, 選舉日은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職務代行者를 포함한다)과 協議하여 늦어도 選舉日전 23日에 公告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이 法에서 “選舉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생략)

2. 地域區國會議員의 補闕選舉 또는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補闕選舉는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法院의 判決 또는 결정에 의하여 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가 그 判決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하 第3號에서 같다)

3. 再選舉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

.....
.....
.....
.....
.....선거일전
20일까지.....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1. (현행과 같음)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95조(재선거)제2항의 규정에

4.~7. (현행과 같음)

第37條(名簿作成) ①選舉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市長(區가 설치되지 아니한 市의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邑長·面長(이하 “區·市·邑·面の長”이라 한다)은 大統領選舉에 있어서는 選舉日전 28日, 國會議員選舉와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舉에 있어서는 選舉日전 22日(이하 “選舉人名簿作成基準日”이라 한다) 현재로 그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選舉權者를 投票區別로 調査하여 選舉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5日 이내(이하 “選舉人名簿作成期間”이라 한다)에 選舉人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第38條(不在者申告) ①選舉人名簿에

②~⑦ (현행과 같음)

제38조(부재자신고) ①.....

올라 있는 國內居住者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選舉日에 자신이 投票所에 가서 投票할 수 없는 때에는 選舉人名簿作成期間중에 區・市・邑・面의 長에게 書面으로 不在者申告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郵便料金は 무료로 한다.

1.~6. (생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在者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不在者申告書에 不在者投票事由(居所에서 投票를 하고자 하는 者는 居所投票事由를 말한다)・姓名・住所・居所・性別 및 生年月日を 기재하여야 하며, 第1項第2號・第3號 또는 第6號에 해당하는 者는 所屬機關이나 施設의 長의 확인을 받아 申告하여야 한다.

③居所에서 投票할 수 있는 者(이하 “居所投票者”라 한다)는 第1項第2號의 者중 不在者投票所에 가서 投票할 수 없는 멀리 떨어진 곳이나 艦艇에 근무하는 者・第1項第3

호를 자격이 있는.....
.....
.....
.....
.....
.....

1.~6.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1. 부재자투표사유(거소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거소투표사유를 말한다)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3. 주소, 거소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의 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합

號의 病院・療養所에 長期寄居하는 者로서 거동할 수 없는 者나 不在 者投票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長期寄居하는 者로서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者와 第1項 第4號에 規定된 身體障礙者에 한하 되, 第1項第2號의 者는 所屬機關의 長의, 第1項第3號의 者는 病院 또는 療養所등의 長의, 第1項第4號의 者는 統・里 또는 班의 長의 확인을 不在者申告書의 해당 欄에 받아 申告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 는 때에는 區・市・邑・面의 長은 不在者申告書의 申告事項을 확인한 후 正當한 不在者申告인 때에는 選舉人名簿에 이를 표시하고 不在者 申告人名簿를 따로 작성하되, 不在 者申告人이 居所投票者인 때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이를 표시하여 야 한다. ⑤~⑦ (생 략) 第49條(候補者登錄 등) ①候補者の 登 録은 大統領選舉에 있어서는 選舉 日 전 22日, 國會議員選舉와 地方自	정에 근무하는 자 2. 제1항제3호의 병원 또는 요양소 에 장기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3.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 는 자 4.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거거하는 자로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에 서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거소 투표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⑤~⑦ (현행과 같음) 第49條(候補者登錄 등) ①..... 24일.....
--	---

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舉에
있어서는 選舉日 전 16日(이하 “候
補者登錄申請開始日”이라 한다)부
터 2日間(이하 “候補者登錄期間”이
라 한다)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
會에 書面으로 申請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
여 候補者登錄을 申請하는 者는 다
음 各號의 書類를 제출하여야 하며,
第56條(寄託金)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寄託金を 납부하여야 한다.

1. (생략)

2. 公職者倫理法 第10條의2(公職選
舉候補者등의 財産公開)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對象財産에 관
한 申告書[당해 選舉가 있는 해
의 前年度 12月 31日 현재의 登
錄對象財産에 관하여 候補者登錄
申請전까지 公職者倫理法 第10條
(登錄財産의 公開)의 規定에 의하
여 登錄對象財産을 公開한 者인
경우에는 그 登錄對象財産의 公
開를 확인할 수 있는 書類를 말
한다]

3. (생략)

.....

.....15일.....

.....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현행과 같음)

2.

.....

.....

.....신고서

.....

.....

.....

.....

.....

.....

.....

.....

3. (현행과 같음)

4. 최근 3年間の 所得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納付實績證明書

5. (생 략)

<신 설>

⑤ (생 략)

⑥政黨의 黨員인 者는 無所屬候補

4.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
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
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
납에 관한 증명서. 이 경우 후보
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
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제
출을 거부할 수 있다.

5. (현행과 같음)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
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
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
서. 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
구되는 학력은 제13항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제60조의3(예비후
보자의 선거운동)제4호의 인쇄물,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 제
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제66
조(소형인쇄물)의 소형인쇄물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
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者로 登錄할 수 없으며, 候補者登錄
期間중(候補者登錄申請시를 포함
한다) 黨籍을 離脫· 변경하거나 2이
상의 黨籍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選舉에 候補者로 登錄될 수
없다. 所屬政黨의 解散이나 그 登錄
의 取消 또는 中央黨의 地區黨創黨
承認取消로 인하여 黨員資格이 상
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생략)

⑧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候補者登録申請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受理하여야 하되, 登録申請書・政黨의 推薦書와 本人承諾書・選舉權者의 推薦狀・寄託金 및 第4項第2號 내지 제5호의 規定에 의한書類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受理할 수 없다. 다만, 候補者의 被選舉權에 관한 證明書類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公職者倫理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録財産을 公開한 候補者의 登録對象財産 公開確認書類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受理하되, 당해 選舉

[illegible]

⑦ (현행과 같음)

⑧

아니한

區選舉管理委員會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機關 또는 團體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에 回報하여야 한다.

⑨ (생략)

⑩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政黨은 選舉期間開始日 전 90일부터 본인 또는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소속 黨員의 전과기록을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당해 경찰관서의 장은 刑의 失效等에關한法律 제6조(수사자료의 조회 및 회보제한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回報 받은 전과기록은 候補者登錄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候補者에 대하여는 候補者登錄마감후 지체없이 당해

.....
.....
.....
.....
.....

⑨ (현행과 같음)

⑩
.....150일.....
.....
.....
.....
.....
.....
.....
.....
.....
.....
.....
.....
.....
.....
.....
.....
.....
.....

選舉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候補者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回報하여야 한다.

⑪ (생 략)

⑫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回報받은 서류를 選舉區民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選舉期間이 아닌 때에는 이를 누구에게든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
.....
.....
.....
.....

⑪ (현행과 같음)

⑫.....
..... 제6호.....
.....
..... 선거일후
에는 이를.....
.....

⑬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동봉하여 관할구역안

의 매 세대에 발송하여야 하며, 제 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에게도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1.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각 재산총액과 재산의 항목별 각 소계

2. 병역사항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신 설>

⑬候補者の登録申請書と推薦書の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로 정한다.

第50條(候補者推薦의 取消와 변경의 금지) ①政黨은 候補者登録후에는 登録된 候補者에 對한 추천을 取消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比例代表市·道

존·비속의 연도별 납부액, 연도별 체납액 및 완납시기(제4항제4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한 후보자의 직계존속의 납부 및 체납실적은 제외한다)

4. 전과기록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

5.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기재내용이 후보자가 제출한 제4항 각호의 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⑮.....
서식, 공개방법,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제출·발송·서식, 소명자료의 서식 및 분량.....
.....

第50條(候補者推薦의 取消와 변경의 금지) ①.....
.....
.....
.....

..... 시 · 도 당 창당 승
인 취소.....

② (현행과 같음)

第52條(登録無効) ①.....

1. · 2. (현행과 같음)

3.
.....
.....
.....발견된 때

4. · 5. (현행과 같음)

6. 政黨推薦候補者が 黨籍을 離脫・변경하거나 2이상의 黨籍을 가지고 있는 때(候補者登録申請시에 2이상의 黨籍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所屬政黨의 解散이나 그 登録의 取消 또는 中央黨의 <u>地區黨創黨承認取消</u>가 있는 때 7. (생략) 8. 第266條(選舉犯罪로 인한 公務擔任등의 제한)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録된 것이 발견된 때 ②・③ (생략) 第57條(寄託金の 반환등) ①政黨 또는 候補者が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때 또는 候補者(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와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를 제외한다)가 당선되거나 死亡한 때에는 寄託金중에서 第56條(寄託金)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寄託金에서 부담하는 費用을 뺀 나머지 금액은 選舉日후 30日 이내에 寄託者에게 반환한다. 1. 大統領選舉, 地域區國會議員選	6. 7. (현행과 같음) 8. <u>제2항 및 정당법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제3항</u>..... ②・③ (현행과 같음) 第57條(寄託金の 반환등)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중에서 제56조(기탁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선거일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	---

學, 地域區市・道議員選舉, 自治
 區・市・郡議員選舉 및 地方自治
 團體의 長選舉
 候補者의 得票數가 有效投票總數
 를 候補者數로 나눈 數이상이거나
 有效投票總數의 100分の 15
 이상인 때

2. 삭제

3. 比例代表國會議員選舉 및 比例
 代表市・道議員選舉
 당해 候補者名簿에 올라 있는 候
 補者중 當選人이 있는 때

②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 또
 는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名簿
 에 올라 있는 候補者중 當選人이
 없는 때 또는 候補者(比例代表國會議
 員候補者와 比例代表市・道議員
 候補者를 제외한다)가 辭退・登録
 이 無效로 되거나 그 得票數가 第1
 項第1號에 미달되는 때에는 選舉日
 후 30日이내에 寄託金중에서 第56
 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寄託金에
 서 부담하는 費用을 뺀 나머지 금
 액은 國家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
 에 귀속한다. 이 경우 第56條第3項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有效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
 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有效투표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
 대표시・도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
 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
 탁금 전액

②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선거일후 30일
 이내에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
 체에 귀속한다. 이 경우 제56조제3
 항의 規定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
 담하여야 할 비용이 해당 기탁자에
 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

.....

의 規定에 의하여 寄託金에서 부담
하여야 할 費用이 寄託金을 넘는
때에는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
의 告知에 따라 그 넘는 금액을 당
해 寄託者가 그 告知를 받은 날부
터 10日 이내에 選舉區選舉管理委員
會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선 國家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가 支出한
후 管轄稅務署長에게 委託하여 管
轄稅務署長이 國稅滯納處分の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하여 國家 또는 당
해 地方自治團體에 납입하여야 한
다.

③~⑤ (생략)

第59條(選舉運動期間) 選舉運動은 당
해 候補者의 登錄이 끝난 때부터
選舉日前日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illegible]

③~⑤ (현행과 같음)

第59條(選舉運動期間)	후보
<u>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u>	
.....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
정에 의하여 등록한 예비후보자
(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가 제
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u>경우</u> 2. 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제60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u>경우</u> 3.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u>경우</u>
第60條(選舉運動을 할 수 없는 者)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選舉運動을 할 수 없다. 다만, 第4號 내지 第9號에 해당하는 者가 候補者의 配偶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생략) 8.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民運動團體로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團體(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常勤任·職員 및 이들 團體 등(市·道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함한다)의 代表者 9. (생략)	第60條(選舉運動을 할 수 없는 者) ① 1.~7. (현행과 같음) 8. 9.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제외한다)는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예비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3. 제266조(선거범죄등으로 인한 공무원임등의 제한)제2항 및 정당법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③예비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
다.

④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
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
되, 피선거권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예비후보자에 대
하여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조회
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없
이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회보하여
야 한다.

⑤제52조(등록무효)제2항의 규정은
예비후보자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
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본
다.

⑥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피
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기타 필요
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으로 정한다.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
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다만, 지하철역 구내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4.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

第61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①政黨 또는 候補者는 選舉運動 기타 選舉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에 따라 選舉事務所와 選舉連絡所를 設置할 수 있다.

1.~6. (생략)

② (생략)

③정당 또는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당부의 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당부의 사무소에 둘 수 있다.

<신설>

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수(그 수는 2만을 초과할 수 없다)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후보자등록기간 개시일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第61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①.....
.....
.....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정당·정당추천후보자 또는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무소에 둘 수 있다.

④예비후보자가 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당해 예비후보자의 선

⑤ (생 략)

⑥選舉事務所와 選舉連絡所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選舉運動을 위한 看板・懸板 또는 懸垂幕을 합하여 모두 4개 이내와 第64條(宣傳壁報)의 宣傳壁報・第65條(選舉公報)의 選舉公報・第66條(小型印刷物)의 小型印刷物 또는 候補者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본다.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
.....
.....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각 1개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다.

⑦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하며, 이를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예비후보자에게 즉시 선거사무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중에서 소장 1인을 두어야 하며,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설치연월일

2.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

3. 소장 및 회계책임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4. 사무소인(印)

④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

第62條(選舉事務關係者の 選任) ① (생 략) ② (생 략) 1.~7. (생 략) <u><신 설></u> ③ (생 략) ④選舉事務長을 두지 아니한 경우	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는 모두 합하여 4개 이내로 한다. ⑤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하여 당해 정당을 대표한다. ⑥정당은 선거일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즉시 폐쇄하여야 한다. ⑦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정당선거사무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第62條(選舉事務關係者の 選任)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③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

에는 候補者(第2項第1號 및 第3號의 경우에는 政黨의 會計責任者)가 選舉事務長을 겸한 것으로 본다.

⑤같은 選舉에 있어서는 2이상의 政黨 또는 候補者가 同一人을 함께 選舉事務長·選舉連絡所長 또는 選舉事務員으로 選任할 수 없다.

⑥ (생략)

第63條(選舉運動機構 및 選舉事務關係者の 申告) ①政黨 또는 候補者가 選舉事務所와 選舉連絡所를 設置·변경한 때와 政黨·候補者·選舉事務長 또는 選舉連絡所長이 選舉事務長·選舉連絡所長이나 選舉事務員(이하 이 條에서 “選舉事務長등”이라 한다)을 選任하거나 解任한 때에는 지체없이 管轄選舉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交替選任할 수 있는 選舉事務員數는 최초의 選任을 포함하여 第62條(選舉事務關係者の 選任)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選舉事務員數의 2倍數를 넘을 수 없다.

②~④ (생략)

第64條(宣傳壁報) ①選舉運動에 사용하는 宣傳壁報에는 候補者の 寫眞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政黨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

⑥.....
정당·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第63條(選舉運動機構 및 選舉事務關係者の 申告) ①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
.....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2항 또는 제3항.....
.....

②~④ (현행과 같음)

第64條(宣傳壁報) ①.....
.....

(候補者만의 寫眞을 말한다) · 姓名 · 記號[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 · 候補者の 掲載順位등)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用紙에 인쇄할 政黨 또는 候補者の 掲載順位를 말한다. 이하 같다] · 政黨推薦候補者の 所屬政黨名(無所屬候補者は “無所屬”이라 표시한다) · 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初 · 中等教育法 및 高等教育法에서 인정하는 正規學歷과 이에 준하는 外國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學歷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正規學歷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卒業 또는 修了당시의 學校名과 수학기간(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은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을 기재하고, 正規學歷에 준하는 外國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學歷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敎育課程名과 修學期間 및 學位를 취득한 때의 取得學位名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 政見 및 所屬政黨의 政綱 · 정책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地域區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地域區市 · 道議員選舉에 있

학
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
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
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제6호의 규
정에 의하여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다.

어서는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名單을 포함하며, 候補者외의 者의 人物寫眞을 제외한다)을 게재하여 洞에 있어서는 人口 500人에 1枚, 邑에 있어서는 人口 250人에 1枚, 面에 있어서는 人口 100人에 1枚의 比率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貼付場所등을 감안하여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人口 1千人에 1枚의 比率까지 조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候補者가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 宣傳壁報의 數量을 第122條(選舉費用制限額등의 公告)의 規定에 의하여 選舉費用制限額을 公告하는 때에 함께 公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數量을 加算할 수 있다.

④~⑪ (생략)

第68條(어깨띠) ①削除

②候補者, 候補者の 配偶者와 直系尊・卑屬, 選舉事務長, 選舉連絡所長, 會計責任者, 選舉事務員, 演說員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
.....
.....
.....

④~⑪ (현행과 같음)

제68조(어깨띠) ①후보자는 자신의 사진・성명・기호 또는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및 對談・討論者는 選舉運動期間중 (演說員 및 對談・討論者는 당해 演說 또는 對談・討論을 하는 장소에 한한다) 候補者의 사진・姓名・記號 및 所屬政黨名(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를 두를 수 있다. 이 경우 候補者가 아닌 자는 신분증명서를 패용하여야 하며, 그 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제6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어깨띠의 規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69條(新聞廣告) ①選舉運動을 위한 新聞廣告는 候補者(大統領選舉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다음 各號에 의하여 候補者登錄후 選舉日전 2日까지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政治資金募金(大統領選舉에 한한다)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 관한法律에 의한 日

게재한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다.

②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를 착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깨띠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69條(新聞廣告) ①.....
.....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선거기간개시일부터.....
.....
.....
.....
.....

刊新聞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日刊新聞에의 廣告回數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日刊新聞에 1回
廣告하는 것을 1回로 본다.

1 (생략)

<신 설>

2. (생략)

②~⑨ (생략)

第70條(放送廣告) ①選舉運動을 위한 放送廣告는 候補者(政黨推薦候補者 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가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舉運動期間중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放送法에 의한 放送事業者가 관리·운영하는 無線局 및 綜合有線放送局(報道專門編成의 放送채널사용事業者의 채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되, 廣告時間은 1回 1分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廣告回數의 계산에 있어서는 再放送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放送施設을 선정하여 당해 放

.....

.....

.....

.....

1. (현행과 같음)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20회 이내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⑨ (현행과 같음)

[illegible]

送網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1. (생략)

<신설>

②~⑧ (생략)

第71條(候補者등의 放送演說) ① (생략)

1. · 2. (생략)

3. 地域區國會議員選舉 및 自治區·市·郡의 長選舉

候補者が 1회 10分이내에서 地域放送施設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放送別 각 2회이내. 다만, 放送法에 의한 지상파텔레비전 地域放送施設을 이용한 放送演說은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4. · 5. (생략)

②이 法에서 “地域放送施設”이라 함은 당해 市·道の 管轄區域안에 있는 放送施設(道の 경우 당해 道の 區域을 放送圈域으로 하는 인접한 廣域市안에 있는 放送施設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당해 市·道안에

.....
.....

1. (현행과 같음)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5회 이내

②~⑧ (현행과 같음)

第71條(候補者등의 放送演說)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
..... <단서 삭제>

4. · 5. (현행과 같음)

②.....
.....
.....
.....
...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地域放送施設이 없는 서울特別市에
인접한 市・道는 大統領令이 정하
는 다른 市・道안에 있는 放送施設
을 말한다.

③・④ (생략)

⑤放送施設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
또는 演說員의 演說을 위한 放送施設
名・利用日時・時間帶등을 選舉
日전 30日(補闕選舉등에 있어서는
選舉人名簿作成期間開始日)까지 管
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에 통보하
여야 한다. 이 경우 任期滿了에 의
한 地域區國會議員選舉 및 自治
區・市・郡의 長選舉에 있어서 하
나의 選舉區에 放送圈域이 겹치는
放送施設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者
는 協議에 의하여 選舉區別로 候補
者가 같은 날의 같은 時間帶에 放
送演說을 할 수 있도록 放送施設名
과 利用日時・時間帶등을 選舉區單
位로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⑥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候補者
登錄申請開始日전 3日까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演說에 이용할 수 있
는 放送施設과 일정을 選舉區單位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후단 삭제>

⑥.....
.....
.....
.....

로 미리 지정·公告하고 候補者登錄申請시 候補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任期滿了에 의한 地域區國會議員選舉 및 自治區·市·郡의 長選舉에 있어서 候補者는 選舉區單位로 하나의 地域放送施設을 이용하여 당해 選舉區에 割當하는 같은 날의 같은 時間帶에 演說을 하여야 한다

⑦~⑬ (생략)

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 ①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그의 부담으로 第71條(候補者등의 放送演說)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등의 放送演說외에 選舉運動期間중 政黨 또는 候補者(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를 말한다)를 選舉人에게 알리기 위하여 候補者(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이 당해 選舉의 候補者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演說을 放送하

.....
.....
..... <후단 삭제>

⑦~⑬ (현행과 같음)

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 ①.....
.....
.....
.....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illegible]

②~④ (현행과 같음)

<삭 제>

하되, 演說時間은 候補者마다 30分의 범위안에서 均衡하게 配定하여야 한다.

③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合同演說會의 日時・場所등을 開催日前 2日까지 公告하여야 하며, 候補者 또는 選舉事務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合同演說會의 告知를 위하여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성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告知放送을 하여야 하며, 演說會 1회에 地域區國會議員選舉 및 自治區・市・郡의 長選舉에 있어서는 200枚이내의, 地域區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100枚이내의, 自治區・市・郡議員選舉에 있어서는 50枚 이내의 壁報를 작성・첩부하여야 하되, 그 規格과 기재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이 경우 第64條(宣傳壁報)第9項의 規定은 合同演說會告知壁報의 첩부에 이를 準用한다.

⑤合同演說會에서의 演說의 順位는 演說會마다 추첨에 의하여 決定하

며, 候補者가 자기의 演說順位の 時刻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演說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당해 選舉區의 候補者가 아니면 合同演說會에 참가하여 演說할 수 없다.

⑦合同演說會를 개최하는 選舉管理委員會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候補者의 연설을 수화로 통역하여야 한다.

⑧合同演說會의 開催豫定時刻전 1時間부터 그 終了豫定時刻후 1時間까지의 사이에는 合同演說會場所로부터 區・市에 있어서는 300미터, 郡에 있어서는 500미터안의 區域에서는 第77條(政黨・候補者등에 의한 演說會)의 演說會를 개최할 수 없다.

第76條(合同演說會場の 秩序維持) ①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이나 그가 미리 지명한 委員은 合同演說會에서 候補者가 이 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이를 制止하여야 하며 그 命令에 불응하는 때에는 演說의 중지 기타 필요

<삭 제>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
이나 그가 미리 지명한委員은 合
同演說會場에서 演說을 방해하거나
合同演說會場の 秩序를 亂하게
하는 者가 있는 때에는 이를 制止
하고, 그 命令에 不服하는 때에는
合同演說會場 밖으로 退場시킬 수
있다.

③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合
同演說會의 演說內容을 錄音하여야
한다.

第77條(政黨・候補者등에 의한 演說
會) ①政黨(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候
補者・選舉事務長 또는 選舉連絡所
長은 選舉運動期間중에 候補者 1人
마다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舉運動
을 위한 演說會를 개최할 수 있다.

1. 大統領選舉

1回 5時間이내에서 市・道마다 2
回이내와 區・市・郡(하나의
區・市・郡이 2이상의 國會議員
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
地域區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삭 제>

같다)마다 1회. 이 경우 公開施設에서의 屋內(천장이 있고 사면이 폐쇄된 場所를 말한다)集會에 한다.

2. 地域區國會議員選舉

1회 3時間이내에서 國會議員地域區마다 2회이내. 다만, 하나의 國會議員地域區가 2이상의 區·市·郡으로 된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區·市·郡마다 각 1회를 더한 回數이내로 한다.

3. 地域區市·道議員選舉 및 自治區·市·郡議員選舉

1회 2時間이내에서 選舉區마다 1회

4. 市·道知事選舉

1회 4時間이내에서 당해 市·道안의 區·市·郡마다 1회

5. 自治區·市·郡의 長選舉

1회 4時間이내에서 區·市·郡마다 2회이내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政黨·候補者 또는 選舉事務長은 2이상의 區·市·郡에 걸쳐 한 場所에서 1회 5時間이내에서 演說會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演說會의 開催回

數의 計算에 있어서는 開催區域마다 각각 1회의 演說會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③政黨 또는 같은 政黨의 추천을 받은 2人이상의 候補者는 2이상의 區・市・郡 또는 選舉區에 걸쳐 한 場所에서 공동으로 第1項의 演說會를 개최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演說會를 共同開催하는 경우 演說會開催時間은 1회 5時間이내로 하되, 그 回數는 각각 1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고, 그 費用은 당해 候補者間の 약정에 따라 分擔할 수 있되, 그 分擔內譯을 第6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第1項에서 “演說會”라 함은 사전에 일정한 場所와 時間을 정하여 多數人을 모이게 하여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の 政見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는 集會를 말한다.

⑥演說會를 개최하고자 하는 者は 開催日前일까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大統領

選舉에 있어서 市・道마다 개최하는 演說會의 경우에는 市・道選舉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區・市・郡 또는 選舉區에 걸쳐 演說會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개최하는 區域名을 명시하여 開催地를 관할하는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⑦第6項의 規定에 의한 演說會開催의 申告를 하는 때에는 積정한 數의 秩序維持人을 申告하여야 하며, 秩序維持人은 秩序維持人임을 표시한 腕章을 착용하고 演說會場의 秩序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第1項의 演說會의 開催豫定時刻 전 1時間부터 그 終了豫定時刻 후 1時間까지의 사이에는 당해 演說會의 場所로부터 區・市에 있어서는 300미터, 郡에 있어서는 500미터안의 區域에서 다른 政黨・候補者등에 의한 演說會를 개최할 수 없다.

⑨第6項의 申告가 동일한 場所에 2이상이 있을 때에는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順位를 調整하여야 한다.

⑩演說會場에서 候補者와 演說員은 錄音器 또는 錄畫器(비디오 및 오디오器機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演說會의 개최중이나 그 전후에 映畫·演劇·音樂(錄音器에 의한 放送을 제외한다) 또는 舞蹈 기타 藝術的 또는 娛樂的 觀覽物을 公演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⑪演說會를 개최하는 者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演說會場의 標識와 政黨이나 候補者를 支持·宣傳하는 宣傳物을 設置·게시할 수 있으며, 大統領選舉의 경우에 한하여 애드벌룬 1개(풍선 1개를 애드벌룬 1개로 본다)를 設置할 수 있다. 다만, 演說會를 개최하는 場所밖에는 확성기와 錄音·錄畫器를 設置할 수 없다.

⑫演說會를 개최하는 者는 第1項第1號 및 第4號의 演說會에 있어서는 演說會 1회에 200枚(大統領選舉에 있어서 市·道마다 개최하는 演說會의 경우에는 區·市·郡連絡所마다 100枚)이내의, 第1項第2號 및 第

5號의 演說會에 있어서는 演說會 1회에 100枚이내의, 第1項第3號의 演說會에 있어서는 演說會 1회에 50枚이내의 告知壁報를 작성하여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의 檢印을 받아 첨부할 수 있고,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의 規定에 의한 演說·對談을 하는 때에 아울러 演說會의 告知를 함께 할 수 있으며, 告知壁報의 規格과 기재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이 경우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演說會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하는 區·市·郡 또는 選舉區마다 각각 演說會 1회에 첨부할 수 있는 枚數의 告知壁報를 첨부할 수 있으며, 그 檢印은 開催地를 관할하는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 또는 각각의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⑬第12項의 告知壁報를 첨부한 者는 演說會終了후 지체없이 이를 撤去하여야 한다.

第78條(公共施設등의 無料이용) ①政
黨・候補者・選舉事務長 또는 選舉
連絡所長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
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
의 1에 해당하는 施設등을 第77條
(政黨・候補者등에 의한 演說會)의
演說會의 場所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第53條
(公務員등의 立候補)第1項第4號
또는 第6號에 規定된 機關을 포
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國家機
關등”이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
리하는 學校・公會堂・公園・運
動場・市場・道路邊廣場 또는 驛
廣場
2. 國家機關등이 소유하거나 관리
하는 高수부지・제방・林野 또는
裸垈地
3. 國家機關등이 소유하거나 관리
하는 住民會館・體育館 또는 文
化院 기타 多數人이 모일 수 있
는 施設이나 場所
4. 第1號 내지 第3號외에 管轄區・
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지정하

<삭 제>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
① 候補者(比例代表國會議員選舉와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를 제외한다) 또는 그 配偶者나 演說員[大統領選舉 및 市·道知事選舉에 한하며, 候補者(大統領選舉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가 選舉運動을 할 수 있는 者 중에서 區·市·郡選舉連絡所마다 지명한 2人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候補者등”이라 한다]은 選舉運動期間중에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の 政見 기타 필요한 사항을 弘報하기 위하여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候補者가 演說・對談을 하는 場所마다 選舉事務員중에서 司會者 1人을 두어 候補者の 紹介와

[illegible]

支援 演說・對談을 하게 할 수 있다.

②~④ (생 략)

⑤자동차에 부착된 확정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정나발의 數는 1개를 넘을 수 없으며, 확정장치는 候補者의 경우 그 配偶者가, 市・道知事選舉에 있어서 區・市・郡選舉連絡所의 경우 2人의 演說員이 공동 또는 교대로 사용할 수 있다.

⑥자동차와 확정장치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標識를 부착하여야 하고, 第64條(宣傳壁報)의 宣傳壁報, 第65條(選舉公報)의 選舉公報, 第66條(小型印刷物)의 小型印刷物 또는 宣傳壁報規格의 2倍이내 크기의 候補者 사진을 붙일 수 있다.

⑦ (생 략)

⑧候補者등이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場所임을 표시하는 標識를 작성하여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第1項의 演說員은 演說・對談場所를

.....
.....

②~④ (현행과 같음)

⑤.....
.....
..... 없다.

⑥.....
.....
.....
.....
..... 후보자
사진.....
.....

⑦ (현행과 같음)

⑧후보자가 제1항 후단의 사회자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자는 당일에는 교체할 수 없다.

관할하는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의 檢印을 받아 演說・對談場所에 게시하고 행하여야 한다.	
⑨第1項의 演說員은 당해 區・市・郡選舉連絡所의 管轄區域안에서만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을 할 수 있으며, 演說・對談을 하는 때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身分證明書を 달아야 한다.	⑨.....선거구안 에서만.....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候補者등이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을 하는 때에는 第75條(合同演說會)의 合同演說會나 第77條(政黨・候補者등에 의한 演說會)의 政黨・候補者등에 의한 演說會 또는 다른 候補者등의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의 進行에 支障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⑪사회자는 제3항의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서만 연설・대답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연설원 또는 사회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답을 하는 장소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⑫자동차・확성장치와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場所의 標識의 規格・기재사항 및 檢印, 錄畫器의 規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⑫녹화기.....
第80條(演說禁止場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이나 場所에서는	第80條(演說禁止場所)

第77條(政黨・候補者등에 의한 演說會)의 演說會 또는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의 演說・對談을 할 수 없다.

1. 第78條(公共施設등의 무료이용) 第1項에 規定된 외의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第53條(公務員등의 立候補)第1項第4號 및 第6號에 規定된 機關을 포함한다]가 소유 하거나 관리하는 建物・施設

2. 列車・電動車・航空機의 안과 그 터미널構內 및 선박・旅客自動車의 안

3. (생 략)

第81條(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團體는 候補者(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對談者 또는 討論者(大統領選舉 및 市・道知事選舉의 경우에 한하며, 政黨 또는 候補者가 選舉運動을 할 수 있는 者 중에서 選舉事務所 또는 選舉連絡所마다 지명한 1人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1人 또는 數人을

제79조.....

1. 國家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다만, 公園・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3. (현행과 같음)

第81條(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 ①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초청하여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 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사항을 알아 보기 위한 對談・討論會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屋內에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의 노동조합과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第53 條(公務員등의 立候補)第1項第4號 내지 第6號에 規定된 政府投資機 關등 2. 鄉民會・宗親會・同窓會, 山岳會 등 同好人會, 계모임등 個人間的 私的 모임 3. 第10條(社會團體등의 公明選舉 推進活動)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에 規定된 團體 ②~⑨ (생략) 第82條의2(公營放送主管 텔레비전 對 談・討論會) ①公營放送社[韓國放送 公社와 放送文化振興會法에 의한 放送文化振興會가 出資한 放送法人 (市・道知事選舉에 있어서는 그 地 域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 에서 같다]는 공동하여 選舉運動期 間중 다음 各號의 1에 의하여 候補	 <삭 제> <삭 제> <삭 제> ②~⑨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 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 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	---

者중에서 1人 또는 數人을 招請하여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사항을 選舉人에게 알리기 위하여 텔레비전 放送을 이용한 對談·討論會를 개최·報道하여야 한다.

1. 大統領選舉

3회 이상

2. 市·道知事選舉

1회 이상

②公營放送社는 공동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談·討論會를 主管하게 하기 위하여 選舉日전 60日까지 選舉區別로 選舉放送討論委員會(이하 이 條에서 “討論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③討論委員會는 放送法人·言論學界·大韓辯護士協會·言論人團體 및 市民團體등이 추천하는 者와 國會에 議席을 가진 政黨이 추천하는 각 1人을 포함하여 大統領選舉를 위한 討論委員會는 11人이내, 市·道知事選舉를 위한 討論委員會는 9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討論委員會의 委員을 추천하는 放送法人·言論學界·言論人團體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당해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2회 이상

②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및 市民團體등의 범위와 추천절차 등은 公營放送社가 協議하여 決定한다.

④討論委員會의 委員은 政黨에 가입할 수 없다.

⑤討論委員會는 초청 候補者와 司會者・質問者의 선정, 對談・討論의 형식, 주제와 시간의 설정 기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談・討論會의 進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決定하여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⑥公營放送社는 공동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談・討論會의 開催日前日까지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에 對談・討論會의 開催申告를 하여야 하고,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화로 통역을 하여야 한다.

⑦公營放送社가 아닌 放送社[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放送施設을 말한다]는 第1項의 對談・討論會를 中繼放送할 수 있다.

⑧第71條(候補者등의 放送演說)第12項, 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第2項 및 第81條(團體의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第2項・第6項 내지 第9項의 規定은 公營放送主管 텔레비전 對談・討論會에 이를 準用한다.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⑤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⑥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⑧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 용료는 국가가 부담한다.

⑩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⑪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그의 부담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신 설>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 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⑫대답·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당·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 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②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5항 내지 제7 항·제8항 본문·제10항 및 제11항 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 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 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 회”로 본다. ③ 정책토론회의 운영, 진행절차, 개 최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82條의3(컴퓨터통신을 이용한 選舉 運動) ①選舉運動을 할 수 있는 者 는 選舉運動期間중에 개인용컴퓨터 를 이용하여 컴퓨터통신의 揭示 板・資料室등 情報貯藏裝置에 選舉 運動을 위한 내용의 情報를 게시하 여 選舉區民이 閱覽하게 하거나, 對 話房・討論室등에 참여하여 選舉運 動을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운동)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보통신망이 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 조(정의)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 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 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 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候補者(候補자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摘示하여 이들을 誹謗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眞實한 사실로서 公共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의 情報貯藏裝置에 第2項의 規定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시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各級選舉管理委員會(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이를 申告할 수 있다.

④各級選舉管理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내용이 第2項의 規定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電氣通信事業者에게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電氣通信事業者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各級選舉管理委員會로부터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誹謗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眞實한 사실로서 公共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各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規定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

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第5項의 요청을 받은 電氣通信事業者와 해당 개인용컴퓨터이용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日이내에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신 설>

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및 선거운동정보의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다.

④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

<신 설>

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등의 실명확인) ①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만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당·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 또

는 예비후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물을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주민등록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④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 인터넷 언론사·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물을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자가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허무인 또는 타인명의를 아이디(이용자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로는 의견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아이디로 게시된 의견을 삭제하여야 한다.

第84條(無所屬候補者등의 政黨標榜禁止) 自治區·市·郡議員選舉의 候補者와 無所屬候補者는 특정 政黨으로부터의 支持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政黨의 黨員經歷의 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86條(公務員등의 選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公務員(國會議員과 그 補佐官·秘書官·秘書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 第53條(公務員등의 立候補)第1項第4號 및 第6號에 規定된 機關등의 常勤 任·職員,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鄉土豫備軍 小隊長級이상의 幹部,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民運動團體로서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團體(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회의 常勤 任·職員 및 이들 團體등(市·道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함한다)의 代表者 또는 國民健康保險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民健康保險公團의 常勤 任·職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第84條(무소속후보자의 政黨標榜禁止) 無소속후보자.....

第86條(公務員등의 選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말한다).....

하여서는 아니된다.

1~7. (생략)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選舉期間開始日전 30日(補闕選舉등에 있어서는 그 選舉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舉日까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政黨의 政綱·정책과 主義·主張을 選舉區民을 대상으로 弘報·宣傳하는 행위. 다만,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에 候補者가 되는 경우 選舉運動期間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創黨大會·合黨大會·改編大會 및 候補者選出大會를 제외하고는 政黨이 개최하는 時局講演會, 政見·政策發表會, 黨員研修·團合

.....

1~7. (현행과 같음)

②.....선거일전 60일
(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
.....선거일까지.....
.....
.....
.....

<삭제>

2.
.....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
.....

大會등 일체의 政治行事に 참석하거나 選舉對策機構, 選舉事務所, 選舉連絡所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選舉에 候補者가 되는 경우와 黨員으로서 所屬政黨이 黨員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政黨의 地區黨 단위 이상의 公開行事に 儀禮의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5. (생략)

<신 설>

정당의

4.·5. (현행과 같음)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기간 동안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1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地方自治團體의 事業計劃・推進實績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活動상황을 알리기 위한 弘報物(弘報紙・소식지・刊行物・施設物・錄音物・錄畵物 기타의 弘報物 및 新聞・放送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分期別로 1種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放送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의 選舉日전 180日(補闕選舉 등에 있어서는 그 選舉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第4項에서 같다)부터 選舉日까지는 弘報物을 발행・배부 또는 放送할 수 없다.

1. ~ 4. (생략)

④ (생략)

第87條(團體의 選舉運動禁止) 團體는
社團・財團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
문하고 選舉期間중에 그 名義 또는
그 代表의 名義로 특정 政黨이나

2. 제1호외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
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
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④

제5항

1.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第87條(團體의 選舉運動禁止)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候補者를 支持・反對하거나 支持・反對할 것을 勸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第2條(定義)의 規定에 의한 勞動組合과 第81條(團體의 候補者等 초청 對談・討論會)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規定된 단체가 아닌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規定된 기관·단체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7.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②政黨이나 候補者가 設立·운영하는 機關·團體·組織 또는 施設은 選舉日 전 180日(補闕選舉등에 있어서는 그 選舉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舉日까지 당해 選舉區民을 대상으로 選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機關·團體 또는 施設의 設立이나 활동내용을 選舉區民에게 알리기 위하여 政黨 또는 候補者の 名義나 그 名義를 類推할 수 있는 방법으로 壁報·懸垂幕·放送·新聞·通信·雜誌 또는 印刷物을 이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宣傳할 수 없다. 다만, 政治資金에 관한法律 第6條의5(集會 또는 郵便·通信에 의한 募金) 또는 같은 法 第6條의6(廣告에 의한 募金)의 規定에 의한 集會와 廣告에 의한 募金を 위한 告知와 廣告는 그러하

[illegible]

지 아니하다.

第89條의2(私組織등을 이용한 選舉運動의 금지) ①누구든지 選舉에 있어서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者を 포함한다)를 위하여 研究所・同友會・鄉友會・山岳會・早起蹴球會, 政黨의 외곽단체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私組織 기타 團體를 設立하거나 設置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選舉運動이외의 目的으로 設立되거나 設置된 團體 기타의 組織이나 그 構成員에게 選舉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金品・響應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당해 團體나 組織 또는 그 代表의 名義로 選舉運動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第91條(擴聲裝置와 自動車등의 사용 제한) ①누구든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演說會場,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場所, 對談・討論會場 또는 政黨의 集會場所에서 演說・對談・討論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

<삭 제>

第91條(擴聲裝置와 自動車등의 사용 제한) 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답
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
.....
.....

고는 選舉期間중 選舉運動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②第75條(合同演說會)의 規定에 의
한 合同演說會 또는 第77條(政黨・
候補者등에 의한 演說會)의 規定에
의한 演說會를 개최할 때에는 그
演說會場所로부터 區・市에 있어서
는 300미터, 郡에 있어서는 500미터
안의 區域에서는 누구든지 확성장
치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演說會
의 進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의 規定에 의한 演說・
對談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選
舉運動을 할 수 없다. 다만, 第77條
의 規定에 의한 演說會場과 第79條
의 規定에 의한 演說・對談場所에
서 정지된 자동차에 승차하여 選舉
運動을 하는 경우와 第79條의 規定
에 의한 演說・對談을 위하여 같은
條 第6項의 規定에 의한 宣傳壁報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선거운동.....
.....

<삭 제>

③.....
.....제79조
.....
.....
.....같은 조.....
.....
.....
.....

④ (현행과 같음)

第93條(脫法方法에 의한 文書·圖畫의 배부·게시등 금지) ①누구든지 選舉日전 180日(補闕選舉등에 있어서는 그 選舉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舉日까지 選舉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政黨(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支持·추천하거나 反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政黨의 명칭 또는 候補者의 姓名을 나타내는 廣告, 人事狀, 壁報, 사진, 文書·圖畫, 印刷物이나 錄音·錄畫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選舉期間중 候補者의 성명·사진·주소·전화번호·학력·경력·현직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候補者가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illegible]

② · ③ (현행과 같음)

第100條(錄音器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選舉期間중 第77條(政黨・候補者등에 의한 演說會)의 演說會 또는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의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錄音器나 錄畫器(비디오 및 오디오器機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選舉運動을 할 수 없다.	第100條(錄音器등의 사용금지) 제79조.....
第101條(他演說會등의 금지) 누구든지 選舉期間중 選舉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演說會 또는 對談・討論會를 제외하고는 多數人을 모이게 하여 個人政見發表會・時局講演會・座談會 또는 討論會 기타의 演說會나 對談・討論會를 개최할 수 없다.	第101條(他演說會등의 금지) 연설・대담 또는.....
第102條(夜間演說등의 제한)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演說會와 對談・討論會(放送施設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개최할 수 없으며,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에 있어서 携帶用	第102條(夜間演說등의 제한) 연설・대담과.....

擴聲裝置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第103條(各種集會등의 제한) ①누구든지 選舉期間중 選舉區民을 대상으로 하거나 選舉가 실시되는 地域안에서 鄉民會·宗親會 또는 同窓會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며,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民運動團體로서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團體(마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選舉期間중 會議 기타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② · ③ (생략)

<신 설>

第104條(演說會場에서의 騷亂行爲등)

.....

.....

.....

第103條(各種集會등의 제한) ①.....

.....

.....

..... 향우회

.....

.....

.....

.....

.....

.....

..... 말한다)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를 포함한다)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第104條(演說會場에서의 騷亂行爲등

의 금지) 누구든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演說會場,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場所, 對談・討論會場 또는 政黨의 集會場所에서 暴行・脅迫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演說會場 등의 秩序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演說會 등의 主管者가 연단과 그 주변의 조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횃불을 사용할 수 없다.

第105條(行列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選舉運動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行進하거나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政黨 또는 候補者의 選舉運動을 방해하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第77條(政黨・候補者등에 의한 演說會)의 規定에 의한 演說會場 및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의 規定에 의한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場所에서 당해 政黨 또는 候補者에 대한 支持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금지)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등.....
연설・대담등.....

第105條(行列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2인(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5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規定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②누구든지 제6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標識物을 휴대하여 選舉運動을 할 수 없다.	<u>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누구든지.....
第106條(戶別訪問의 제한) ①・② (생략) ③누구든지 選舉期間중 演說會 또는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의 통지를 위하여 戶別로 訪問할 수 없다.	第106條(戶別訪問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u>공개장소</u>
第109條(書信・電報등에 의한 選舉運動의 금지) ①누구든지 選舉期間중 選舉權者에게 書信・電報・모사전송 기타 電氣通信의 방법을 이용하여 選舉運動을 할 수 없다. 다만, <u>개인용컴퓨터・電話(컴퓨터를 이용한 自動送信裝置를 설치한 電話의 경우를 제외한다)</u>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第109條(書信・電報등에 의한 選舉運動의 금지) ①..... <u>인터넷(광고를 제외한다)</u>..... ②・③ (현행과 같음)
第111條(議政活動 보고) ①國會議員 또는 地方議會議員은 報告會 등 集	第111條(議政活動 보고) ①.....

인터넷

선거일

전 90일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

② · ③ (현행과 같음)

第112條(기부행위의 정의등) ①.....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

<u>한다.</u>	<u>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u>
1. <u>金錢·화환·달력·書籍 또는 飮食物 기타 이익이 되는 物品의 제공행위</u>	<u><삭 제></u>
2. <u>物品이나 施設의 無償貸與나 無償讓渡 또는 債務의 免除·輕減 行爲</u>	<u><삭 제></u>
3. <u>入黨이나 入黨願書를 받아 주는 代價의 제공행위</u>	<u><삭 제></u>
4. <u>觀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행위</u>	<u><삭 제></u>
5. <u>交通施設便宜의 제공행위</u>	<u><삭 제></u>
6. <u>演說會,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 對談·討論會 또는 政黨이 개최하는 集會에 참석하는 者나 이들 集會에 청중을 동원해 주는 者에 대한 代價의 제공행위</u>	<u><삭 제></u>
7. <u>財産상의 價値가 있는 정보의 제공행위</u>	<u><삭 제></u>
8. <u>物品이나 用役을 싼 값 또는 무료로 제공하거나 비싼 값으로 구입하는 행위</u>	<u><삭 제></u>
9. <u>宗教·社會團體등에 金品の 제</u>	<u><삭 제></u>

공 기타의 財産상의 이익을 제공
하는 일체의 행위

10. 기타 第1號 내지 第9號에 規定
된 외에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
하고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11. 第1號 내지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
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儀禮的
이거나 職務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
인 政黨活動으로서 다음 各號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는 寄附行爲로 보
지 아니한다.

1. 民法 第777條(親族의 範圍)의 規
定에 의한 親族의 冠婚喪祭儀式
기타 慶弔事에 祝儀·賻儀金品을
제공하거나 親族외의 者의 冠婚
喪祭儀式 기타 慶弔事에 第117條
의2第1項第2號 但書의 規定에 의
한 慶弔品을 제공하는 행위

2. 獎學財團 또는 獎學基金이 選舉
日 2年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
하여 온 獎學金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寄附行爲制限期間중에 獎學
金의 금액과 대상·지급방법등을
확대변경하는 행위 또는 候補者

<삭 제>

<삭 제>

②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통상적인 政黨활동과 관련한 행
위

가.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
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
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나.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
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
부하는 행위

다.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내에서
정당이 소속후보자에게 선거비
용을 지원하는 행위

라.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의 規定에 의

(候補者が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나 그 所屬政黨의 名義를 밝히거나 候補者나 그 所屬政黨의 名義를 推定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3. 第140條(創黨大會등의 개최와 告知의 제한)第1項의 規定에 의한 創黨大會등과 第141條(黨員集會의 제한)第2項의 規定에 의한 黨員集會 및 黨員敎育 기타 所屬 黨員만을 對象으로 하는 黨員集會에서 參席黨員등에게 政黨의 經費로 제공하는 다음 各目の 1에 해당하는 행위(膳物이나 紀念品을 제외한다)

가. 敎材 기타 政黨의 弘報印刷物을 제공하는 행위

나. 싼 값의 政黨의 배지나 상징마스크트를 제공하는 행위

다. 第1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創黨大會등에 있어 그 開催場所가 大衆交通手段이 없거나 交通이 불편한 場所로서 移動을 위하여 參席黨員에게 交通便利를 제공하는 행위

한 창당대회등과 제141조(당원 집회의 제한)제2항의 規定에 의한 당원집회 및 당원敎育 기타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이나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크트를 제공하는 행위

마.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는 제외한다)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바.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 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4.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다과·떡·김밥·음료(酒類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飲食物(溫泉場·觀光地 또는 遊興施設을 갖춘 場所 등에서의 接待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가. 選舉事務所·選舉連絡所 또는 政黨의 區·市·郡黨連絡所이상의 黨部の 事務所를 방문하는 者

나. 國會議員 및 地方議會議員의 직무상의 행위로서 개최하는 議政報告會에 참석한 者

다. 第14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黨員集會에 참석한 所屬黨員

라. 第142條(黨職者會議의 제한)第1項의 規定에 의한 擴大黨職者會議와 地區黨의 代表者가 개최하는 黨職者會議(區·市·郡黨連絡所의 部長級이상의 幹部와 邑·面·洞의 男·女責任者級이상의 幹部가 참석하는 會議를 말한다)에 참석한 黨職者

5.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食事類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 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다.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라.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과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의 飲食物(溫泉場・觀光地 또는 遊興施設을 갖춘 場所등에서의 接待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가. 選舉運動을 위하여 候補者와 함께 다니는 者. 이 경우 함께 다니는 者의 범위에 관하여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나. 政黨의 地區黨代表者(候補者를 제외한다)가 管轄區域안의 地域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者. 이 경우 함께 다니는 者의 범위에 관하여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다. 第1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政黨의 創黨大會등에 參席한 黨員과 來賓. 이 경우 酒類는 제외한다.

라. 政治資金에關한法律 第6條의5 (集會 또는 郵便・通信에 의한 募金)의 規定에 의하여 後援會가 金品募集을 위한 集會를 개최한 때에 그 集會에 참석하여 金品을 기부한 者. 다만, 選舉期間중에는 다과류의 飲食物에 한

사회단체의 構成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사.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아.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한다.

6. 政黨의 中央黨이 第14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擴大黨職者會議 參席對象者와 有給事務職員을 대상으로 행하는 黨員教育에서 政黨의 經費로 參席黨員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宿食 또는 實費의 旅費나 交通便宜를 제공하는 행위

7. 기타 儀禮的이거나 職務상의 행위 또는 救護的·慈善的 행위나 통상적인 政黨活動으로서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행위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장애인복지법 제4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 및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의 규정에 의한 복지증진 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

③ (생략)

④寄附行爲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寄附行爲制限期間”이라 한다)은 다음各號와 같다.

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과약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 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 (현행과 같음)

<삭제>

1.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에 있어서 는 選舉日 전 180日부터 選舉日까 지 2. 補闕選舉등에 있어서는 그 選舉 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 舉日까지 ⑤各級選舉管理委員會(投票區選舉 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는 第4項의 寄附行爲制限期間이 시작되는 때에 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 는 바에 따라 寄附行爲制限의 主 體·내용 및 기간 기타 필요한 사 항을 廣告등의 방법으로 弘報하여 야 한다.	⑤.....기부행위 제한.....
第113條(候補者등의 寄附行爲制限) 候 補者(候補者が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와 그 配偶者는 寄附行爲 制限期間중 당해 選舉에 관한 여부 를 불문하고 일체의 寄附行爲를 할 수 없다.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 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 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 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 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 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 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 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

第114條(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등의 寄附行爲制限) ①政黨(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나 그 配偶者의 直系尊·卑屬과 兄弟姊妹, 候補者의 直系卑屬 및 兄弟姊妹의 配偶者, 選舉事務長, 選舉連絡所長, 選舉事務員, 會計責任者, 演說員, 對談·討論者나 候補者 또는 그 家族(家族의 범위는 第10條 第1項第3號에 規定된 “候補者의 家族”을 準用한다)과 관계있는 會社 기타 法人·團體(이하 “會社등”이라 한다) 또는 그 任·職員은 寄附行爲制限期間중 選舉期間전에는 당해 選舉에 관하여, 選舉期間에는 당해 選舉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候補者 또는 그 所屬政黨을 위하여 일체의 寄附行爲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候補者 또는 그 所屬政黨의 名義를 밝혀 寄附行爲를 하거나 候補者 또는 그 所屬政黨의 名義를 推定할 수 있는 방법으로 寄附行爲를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第114條(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등의 寄附行爲制限) ①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선거기간전에는.....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당해 選舉에 관하여 候補者 또는 政黨을 위한 寄附行爲로 본다.	
② (생략)	
第115條(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 第113條(候補者등의 寄附行爲制限) 또는 第114條(政黨 및 候補者の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에 規定되지 아니한 者라도 누구든지 寄附行爲制限期間중에 당해 選舉에 관하여 候補者(候補者が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그 所屬政黨(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위하여 寄附行爲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候補者 또는 그 所屬政黨의 名義를 밝혀 寄附行爲를 하거나 候補者 또는 그 所屬政黨의 名義를 推定할수 있는 방법으로 寄附行爲를 하는 것은 당해 選舉에 관하여 候補者 또는 政黨을 위한 寄附行爲로 본다.	 선거에 관하여.....
第116條(寄附의 勸誘·요구등의 금지) 누구든지 寄附行爲制限期間중 당해 選舉에 관하여 政黨(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候補者(候補자가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第116條(寄附의 勸誘·요구등의 금지) 누구든지 寄附行爲制限期間중 당해 選舉에 관하여 政黨(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候補者(候補자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또는 그 家族, 選舉事務長, 選舉連絡所長, 選舉事務員, 會計責任者, 演說員, 對談・討論者, 第114條(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등의 寄附行爲制限)第2項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 또는 그 家族과 관계있는 會社등이나 그 任・職員과 第115條(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의 規定에 의한 第三者로부터 寄附를 받거나 寄附를 勸誘 또는 요구할 수 없다.

第117條의2(祝儀・賻儀金品등의 喪事

제한) ①國會議員・地方議會議員・地方自治團體의 長・政黨의 地區黨代表者・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포함한다) 및 그 配偶者는 選舉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選舉區안에 있는 者나 機關・團體・施設 또는 당해 選舉區의 밖에 있더라도 그 選舉區民과 연고가 있는 者에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野遊會・관광모임・體育大會・등산대회등 각종행사에 金品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2. 民法 第777條(親族의 範圍)의 規

장・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
.....
.....
.....
.....

<삭 제>

定에 의한 親族외의 者の 冠婚喪
祭儀式 기타 慶弔事に 祝儀・賻
儀金品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
는 가액범위안에서 慶弔品을 제
공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3. 結婚式에서의 主禮行爲

②누구든지 第1項의 행위를 약속·
지시·勸誘·斡旋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③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中央選
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의례
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救護的·
慈善的行爲,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第112條(寄附行爲의 定義 및 제한
기간등)第2項의 規定에 의한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19條(選舉費用등의 定義) ①이 法
에서 “選舉費用”이라 함은 당해 選
舉에서 選舉運動을 위하여 소요되
는 金錢·物品 및 債務 기타 모든
財産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
해 候補者(大統領選舉에 있어서 政
黨推薦候補者와 比例代表國會議員
選舉 및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第119條(選舉費用등의 定義) ①.....
.....
.....
.....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
는 자를 포함하며, 대통령선거.....
.....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가 부담하는 費用을 말한다. 이 경우 이 法에 위반되는 選舉運動을 위하여 支出한 費用과 寄附行爲制限規定을 위반하여 支出한 費用 및 第三者가 政黨・候補者・選舉事務長・選舉連絡所長 또는 會計責任者와 通謀하여 당해 候補者の 選舉運動을 위하여 支出한 費用 및 寄附行爲制限規定을 위반하여 支出한 費用은 모두 選舉費用으로 본다.

②・③ (생략)

第120條(選舉費用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費用)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費用은 이를 이 法の 規定에 의한 選舉費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1. 選舉權者の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費用등 候補者登録전의 選舉運動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費用

2.~7. (생략)

8. 第112條(寄附行爲의 定義 및 제한기간등)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寄附行爲로 보지 아니하는 儀禮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정당・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②・③ (현행과 같음)

第120條(選舉費用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費用)

1.선거운동.....

2.~7. (현행과 같음)

8.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등).....

的이거나 職務상의 행위에 소요되는 費用. 다만, 같은 條 같은 項第4號 目 및 第5號 目的 행위에 소요되는 費用을 제외한 다.

9. (생략)

<신설>

..... 행위.....
.....
..... 동조동항제1호 마
목 및 제2호 사목.....
.....
....

9. (현행과 같음)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

1. 대통령선거

$\text{인구수} \times 950 \text{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 \text{억 원} + (\text{인구수} \times 200 \text{원}) + (\text{읍} \cdot \text{면} \cdot \text{동수} \times 200 \text{만원})$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3 \text{억 원} + (\text{인구수} \times 20 \text{원})$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

$4 \text{천만원} + (\text{인구수} \times 100 \text{원})$

5.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4 \text{천만원} + (\text{인구수} \times 50 \text{원})$

6. 시·도지사선거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선거

$4 \text{억 원} (\text{인구수 } 200 \text{만 미만인 때})$

에는 2억원)+(인구수×300원)

나. 도지사 선거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인 때에는 3억원)+(인구수×250원)

7. 자치구·시·군의원선거

3천500만원+(인구수×100원)

8.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9천만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100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이하 “제한액산정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액산정비율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 때마다 정한다.

③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을 위한 인구수의 기준일, 제한액산정비율의

第122條(選舉費用制限額등의 公告) ①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別로 허용되는 選舉運動方法에 소요되는 費用등을 감안하여 選舉費用制限額을 總額으로 算定하여 選舉期間開始日전 10日까지 公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法の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가 政黨 또는 候補者를 위하여 補填할 費用도 함께 公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選舉費用制限額의 算定方法 및 公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22條의2(選舉費用의 補填등) ①이

法の 規定에 의한 選舉運動을 위하여 支出하는 費用은 당해 候補者(大統領選舉의 政黨推薦候補者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舉 및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부담하되, 候補者가 第57條(寄託金の 반환등)第1項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122條(선거비용제한액의 公告) 선거

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제 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告하여야 한다.

第122條의2(選舉費用의 補填등) ①선

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제132조(수입과 지출보고서)제1항의 규정에

費用은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가 第122條(選舉費用制限額등의 公告)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한 費用의 범위안에서 大統領選舉 및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國家가,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舉에 있어서는 當해 地方自治團體가 選舉日후 補填한다.

1. 第64條(宣傳壁報)의 規定에 의한 宣傳壁報의 作成費用

2. 第65條(選舉公報)의 規定에 의한 選舉公報의 作成費用

3. 第66條(小型印刷物)의 規定에 의한 小型印刷物의 作成費用

4. 제67조의 規定에 의한 현수막의 제작비용

5. 第69條(新聞廣告)의 規定에 의한 新聞廣告費用

6. 第70條(放送廣告)의 規定에 의한 放送廣告費用

7. 第71條(候補者등의 放送演說)의 規定에 의한 放送演說費用중 候補者가 行한 放送演說費用

8. 제82조의3의 規定에 의한 選舉運動을 위하여 候補者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비용

의하여 제출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하며, 허위로 보고하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지출하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 제한액의 公告)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9. 제10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選舉運動을 위하여 허용된 전화를 이용한 選舉運動費用

10. 大統領選舉・國會議員選舉 및 市・道知事選舉에 있어서 다음各目の 1에 해당하는 費用

가.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의 規定에 의한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用 자동차 및 확성장치의 賃借費用(演說・對談用 자동차의 油類費用을 포함한다)

나. 第135條(選舉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의 規定에 의한 選舉事務長등의 手當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 부담한다. <후단 신설>

1.~3. (생략)

4. 第75條(合同演說會)의 規定에 의한 合同演說會의 開催費用

<신설>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②.....
.....
..... 이 경우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3. (현행과 같음)

4.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개최비용

5.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5. · 6. (생략)	<u>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u> 6. · 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③ (생략) 第123條(會計責任者의 選任등) ①政黨 (大統領選舉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 舉 및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한한다) 또는 候補者(選舉連絡所의 경우에는 選舉連絡所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候補者登 錄申請후 지체없이 選舉事務所와 選舉連絡所마다 選舉費用에 관한 收入과 支出을 행할 會計責任者 1 人을 選舉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 에서 選任하여 그 姓名·住所 및 住民登録番號를 당해 選舉管理委員 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第123條(會計責任者의 選任등) ①…… …… ……(예비후보자를 포함하 며, 선거연락소…… ……다음 각호 의 1에 정하는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회계책임자 1인 을 선임하여 그 성명·주민등록번 호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 후보 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2.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 : 제61 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를 하는 때
② · ③ (생략) ④政黨 또는 候補者가 會計責任者 를 選任·申告하는 때에는 第122條 (選舉費用制限額등의 公告)의 規定 에 의한 選舉費用制限額 한도내에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22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

②政黨 또는 候補者가 會計責任者를 選任・申告한 때에는 選任・申告전의 選舉費用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引繼・引受書를 작성하여 引繼・引受者가 署名・捺印한 후 現金 및 會計帳簿 기타 關係書類와 함께 會計責任者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第127條(選舉費用의 收入・支出) ①政黨 또는 候補者가 會計責任者를 選任・申告한 때에는 즉시 당해 選舉事務所 또는 選舉連絡所의 所在地를 주된 營業區域으로 하는 金融機關에 選舉費用의 收入과 支出을 위한 預金計座를 開設하고, 당해 政黨 또는 候補者の 姓名・預金主名・金融機關名・預金の 종류・預金計座 番號를 管轄選舉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추
천하고자 하는 정당의 회계책임자
가 담당한다.

②.....후보자(예비후보자
를 포함한다).....
.....
.....
.....
.....
.....

第127條(選舉費用의 收入・支出) ①.....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
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할

<신 설>

<신 설>

第129條(會計帳簿의 비치·기재) ① ·
② (생 략)
③會計責任者는 자동차(選舉運動用
자동차를 말한다), 擴聲裝置, 印刷
物, 施設物 기타 裝備·物品을 選舉
運動을 위하여 무상 또는 통상의
가격보다 현저히 싼 값으로 사용하
는 경우에도 시중의 통상적인 去來
價格 또는 賃借價格에 상당하는 價
額을 選舉費用으로 계상하여야 한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예
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
또는 수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금액이 20만원(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총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
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선
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의
지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129條(會計帳簿의 비치·기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다. 이 경우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補填對象이 되는 印刷物・施設物
기타 物品에 대하여는 第122條(選
舉費用制限額등의 公告)第1項 後段
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金額을
그 價額으로 본다.

④第1項의 會計帳簿의 종류・規格
과 그 기재방법 및 第3項 前段의
價額算定方法은 中央選舉管理委員
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33條(報告書등의 閱覽 및 寫本交
付) ①第132條(收入과 支出報告書)
의 規定에 의하여 收入과 支出報告
書を 받은 選舉管理委員會는 收入
과 支出報告書・第129條(會計帳簿
의 비치・기재)第1項第2號에 規定
된 사항을 기재한 選舉費用의 收入
과 支出明細書 및 第130條(領收證
기타 證憑書類)의 規定에 의한 領
收證 기타 證憑書類의 寫本을 당해
選舉管理委員會 事務所에 비치하고,
選舉費用의 收入과 支出報告書 寫
本の 公告日부터 3月間(이하 이 條
에서 “閱覽期間”이라 한다) 政黨(당
해 選舉區에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

... <후단 삭제>

④.....
..... 제3항.....
.....
.....

제133조(보고서등의 열람 및 사본교
부) ①.....
.....
..... 다음
각호의 서류.....
.....
.....
.....
.....
.....
.....
.....
.....
.....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을 말한다)・候補者・選舉事務長・
選舉連絡所長 또는 당해 選舉區의
選舉人(이하 이 條에서 “閱覽人”이
라 한다)에게 公開하여야 한다. 다
만, 閱覽期間이 아닌 때에는 이를
누구에게든지 公開하여서는 아니된
다.

②~⑥ (생 략)

⑦收入과 支出報告書의 閱覽 및 寫
本交付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
舉管理委員會規則로 정한다.

第134條(資料提出要求 등) ①收入과 支
出報告書を 받은 選舉管理委員會와
그 上級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費用
의 收入과 支出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會
計帳簿 기타 出納書類를 보거나, 政
黨・候補者・會計責任者 또는 選舉
費用에서 支出하는 費用을 지급받
거나 받을 權利가 있는 者 기타 관
계인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입과 지출보고서

2. 제129조(회계장부의 비치·기재)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
재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명
세서

3. 제130조(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 증
빙서류

②~⑥ (현행과 같음)

⑦.....열람·공개
.....
.....

第134條(資料提出要求 등) ①각급선거
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
.....후보자·예비후보자.....
.....
.....
.....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費用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金融機關의 長에게 候補者・選舉事務長・選舉事務所の 會計責任者 또는 候補者の 直系尊・卑屬이나 配偶者에 관한 필요한 金融去來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金融機關의 長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신 설>

.....
..... <후단 삭제>

②各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 법에 위반하여 선거비용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계좌에 입·출금된 타인의 계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계좌개설 내역

②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요
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
야 한다.

<신 설>

③ (생 략)

第135條의2(選舉費用補填의 제한) ①
(생 략)

②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候補
者・選舉事務長 또는 選舉事務所의
會計責任者가 당해 選舉와 관련하
여 이 法에 規定된 罪를 범함으로
인하여 有罪의 判決이 確定되거나
選舉費用制限額을 초과하여 지출한

2. 통장원부 사본

3. 계좌이체의 경우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

4. 수표에 의한 거래의 경우 당해
수표의 최초발행기관 및 발행의
퇴인의 인적사항

③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자는 지
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
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
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
는 아니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第135條의2(選舉費用補填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후보
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
.....
.....
.....

[illegible]

第137條(政綱・정책의 新聞廣告등의
제한) ①.....
.....
.....정기간행물(이하·
.....
.....
.....
.....
.....
.....
.....
.....

1.

90일

70회

2. 3. (생략)

② ③ (생략)

第137條의2(政綱·정책의 放送演說의 제한) ①政黨이 放送施設[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政綱·정책을 알리기 위한 放送演說을 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1.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

政黨의 中央黨 代表者 또는 그가 지명한 者가 행하되, 選舉日 전 60日부터 選舉期間開始日 전일까지 1회 10分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 각 6회 이내

2. 大統領 闕位로 인한 選舉, 再選舉[第197條(選舉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舉)의 規定에 의한 再選舉를 제외한다] 및 延期된 選舉
政黨의 中央黨 代表者 또는 그가

2. 3.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第137條의2(政綱·정책의 放送演說의 제한) ①.....
.....
.....
.....
.....
.....
.....

1.

.....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명한 자가 행하되, 선거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별로 월 2회(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이 해당 달의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내

2.
.....
.....
.....
..... 그가

지명한 者가 행하되, 그 選舉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舉 期間開始日 전일까지 1회 10分이 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 別 각 5회 이내

②・③ (생략)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演說의 費用은 당해 政黨이 부담하되, 國會에 交渉團體를 구성한 政黨이 第82條의2(公營放送主管 텔레비전 對談・討論會)第1項의 公營放送社를 이용하여 放送演說을 하는 때에는 각 公營放送社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로 각 2회의 放送演說의 費用(製作費用을 제외한다)은 당해 公營放送社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⑦ (생략)

第139條(政黨機關紙의 발행・배부제한) ①政黨의 中央黨은 選舉期間중 機關紙를 통상적인 방법외의 방법으로 발행・배부할 수 없다. 다만, 選舉期間중 통상적인 週期에 의한 發行回數가 2회미만인 때에는 2회(增補・號外・臨時版을 포함하며, 배부되는 地域에 따라 게재내용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공영

방송사.....

.....

.....

.....텔레비전 및 라

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

송연설비용(제작비용을 제외한다)은

당해 공영방송사가 이를 부담하여

야 한다.

⑤~⑦ (현행과 같음)

第139條(政黨機關紙의 발행・배부제

한) ①.....

.....

.....

.....

.....

.....

.....

일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본다)이내로 한다. 이 경우 政黨의 中央黨외의 黨部가 발행하거나 演說會場과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場所 또는 對談・討論會場에서의 배부, 거리에서의 판매・배부, 첩부, 게시, 撒布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배부로 보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第140條(創黨大會등의 개최와 告知의 제한) ①政黨이 選舉日前 120日(補闕選舉등에 있어서는 그 選舉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舉일까지 創黨大會・合黨大會・改編大會 및 候補者選出大會(이하 이 條에서 “創黨大會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多數人이 왕래하는 公開된場所가 아닌 場所에서 所屬黨員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하되, 社會通念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黨員이 아닌 者를 초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創黨大會등을 주관하는 黨部는 政黨法 第10條의2(創黨集會의 公開)第2項의 新聞公告를 하는 외에 당해 地區黨의 創黨大會등에

.....
.....
.....
공개장소.....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①.....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
.....
.....
.....
.....
.....
.....소속당원(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당해 정당
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②.....
정당은.....
.....
.....창당대회등의.....

한하여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0枚이내의 創
黨大會등의 告知를 위한 告知壁報
를 첨부하고, 創黨大會등의 場所에
2枚이내의 標識를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新聞公告・告知壁報・標識
에는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
다)의 사진・姓名(姓名을 類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는 宣傳
口號등 候補者를 宣傳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③ (생략)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告知壁報와
標識는 당해 集會終了후 지체없이
主催者가 撤去하여야 한다.

第141條(黨員集會의 제한) ①政黨은
選舉日전 30일부터 選舉日까지 所
屬黨員의 團合・修練 기타 명목여
하를 불문하고 選舉가 실시중인 選
舉區안이나 選舉區民인 黨員을 대
상으로 黨員修練會등(이하 이 條에
서 “黨員集會”라 한다)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黨務에 관한 連絡・指
示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

.....

.....

.....

.....

5매.....

.....신문공고.....

.....

.....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표지.....

.....

.....

第141條(黨員集會의 제한) ①.....

.....

.....수련・연수・교육.....

.....

.....

.....

.....

.....

.....

지는 黨員間의 面接은 黨員集會로
보지 아니하나 그 面接시에 食事・
茶菓 또는 飲料의 제공이 부가되는
때에는 금지된 黨員集會로 본다.

②政黨이 寄附行爲制限期間開始日
부터 選舉日전 31日까지 黨員集會
를 개최하는 때에는 多數人이 왕래
하는 場所가 아닌 公開된 場所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신 설>

.....
.....아니한다.

②정당이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
(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
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개최지역
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
원회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
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기타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
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③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보조
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53
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기관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국가기관등”
이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의 장소로써 무료
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③第2項의 黨員集會를 개최하는 때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黨員集會 1회에 10枚이내의 告知壁報를 작성·첩부할 수 있으며, 그 集會場所에는 이 法에 의한 黨員集會임을 표시하는 標識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告知壁報와 標識에는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의 사진·姓名(姓名을 類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는 宣傳口號등 候補者가 되고자하는 者를 宣傳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신 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告知壁報와 標識는 당해 集會終了후 지체없이 主催者가 撤去하여야 한다.

第142條(黨職者會議의 제한) ①政黨은 選舉期間開始日부터 選舉日까지 擴大黨職者會議(統·里와 自然部落의

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당해 정당이 보상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당원집회 장소의 외부에는 이 법에 의한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하되, 그 개최자는 당해 집회종료 후에는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지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구호 기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⑥당원집회의 신고, 표지의 규격 또는 매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男・女責任者級 또는 靑年責任者級 이상의 幹部가 참석하는 會議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邑・面・洞別로 1회에 한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政黨이 第1項의 擴大黨職者會議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開催日 前日까지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③削除

④削除

⑤第2項의 擴大黨職者會議의 申告 書式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43條(黨員教育의 제한) ①政黨은 選舉日전 30日부터 選舉日까지 所屬黨員의 訓練・研修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選舉가 실시중인 選舉區안이나 選舉區民인 黨員을 대상으로 黨員教育을 실시할 수 없다.

②削除

③政黨의 地區黨이 寄附行爲制限期間開始日부터 選舉日전 31日까지 黨員教育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삭 제>

地區黨(區·市·郡黨連絡所를 포함한다)事務所·學校·公會堂 기타 公共機關·團體등 公共施設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第144條(政黨의 黨員募集등의 제한)

①政黨은 選舉期間중 黨員을 모집하거나 入黨願書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地區黨의 創黨 또는 改編을 위하여 創黨大會·改編大會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集會日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政黨의 地區黨은 選舉期間중에 5人이내의 有給事務職員을 둘 수 있되, 하나의 國會議員地域區가 2이상의 區·市·郡으로 된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區·市·郡마다 3人이내의 有給事務職員을 더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交替는 有給事務職員定數의 2分の 1을 넘을 수 없다.

第145條(黨舍揭示 宣傳物등의 제한)

① (생략)

②政黨의 中央黨·黨支部·地區黨 또는 區·市·郡黨連絡所에 設置되는 각 1개의 選舉對策機構와 政治資金에關한法律에 의한 後援會의 事務所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

第144條(政黨의 黨員募集등의 제한)

①.....
.....
.....시·도당.....
.....
.....

②정당의 시·도당은 선거기간중에 5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체는 3인을 넘을 수 없다.

第145條(黨舍揭示 宣傳物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중앙당 및 시·도당.....
.....
.....
.....

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1개의
看板을 달 수 있다.

第146條(選舉方法) ① (생 략)

②投票는 직접 또는 郵便으로 하되,
1人 1票로 한다. 이 경우 市·道議
員選舉에 있어서는 地域區市·道議
員選舉 및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
마다 1인 1표로 한다.

③ (생 략)

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① (생 략)

②投票所는 投票區안의 學校, 邑·
面·洞事務所등 官公署 기타 公共
機關·團體의 事務所(里事務所를
포함한다)와 公會堂중에서 選舉人
이 投票하기 편리한 곳에 設置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投票區
안의 다른 場所에 設置하거나 당해
投票區안에 投票所를 設置할 적당
한 場所가 없는 경우에는 管轄區·
市·郡選舉管理委員會의 決定에 의
하여 당해 投票區안의 다른 場所
또는 인접한 다른 投票區안에 投票
所를 設置할 수 있다.

<신 설>

.....
.....

第146條(選舉方法)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만,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
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
마다.....

③ (현행과 같음)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
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
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
치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안에 투
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인접한 다
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학교·관공서 및 공공기관·단체
의 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

③~⑥ (생략)

⑦投票所에는 投票事務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投票事務員을 둔다.

⑧ (생략)

⑨投票事務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가 위촉하되, 選舉日前 3일까지 그 姓名을 公告하여야 한다.

1.~4 (생략)

<신설>

⑩ (생략)

第148條(不在者投票所の 設置) ①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日前 7일부터 3日間(이하 “不在者投票期間”이라 한다)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舉人이 投票할 投票所(이하 “不在者投票所”라 한다)를 당해 事務所 所在地에 設置・운영하되, 2이상의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같은 建物 또는 施設안에 있는 때에는 不在者投票

所 設置를 위한 장소사용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⑦ (현행 제3항 내지 제6항과 같음)

<삭제>

⑧ (현행과 같음)

⑨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투표사무원을.....

1.~4 (현행과 같음)

5.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⑩ (현행과 같음)

第148條(不在者投票所の 設置) ①.....
.....
.....6일부터 2일간.....
.....
.....
.....
.....
.....
.....
.....
.....

所를 공동으로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在者投票所를 設置하는 때에는 選舉日전 10日까지 그 명칭・所在地 및 設置・운영기간을 公告하고, 選舉事務長 또는 選舉連絡所長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管轄區域안의 投票區마다 5個所에 公告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不在者投票所의 設置場所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⑤ (생략)

⑥第147條(投票所의 設置)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不在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

⑦ (생략)

第149條(機關・施設안의 不在者投票所) ① (생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機關 또는 施設의 長이 不在者投票所를 設置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不在者申告人數・설치사유・所在地등을 명시하여 選舉日전 11日까지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許可

.....
...

② (현행과 같음)

③.....
.....
.....9일.....
.....
.....
.....
.....
.....
.....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7항.....
.....

⑦ (현행과 같음)

第149條(機關・施設안의 不在者投票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0일.....
.....

申請을 하여야 하며,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機關 또는 施設의 長과 協議하여 不在者投票日時와 場所를 정하여 이를 許可하고 選舉事務長 또는 選舉連絡所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第147條(投票所의 設置)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第1項의 不在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 ⑥ (생략)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의 掲載順位등) ①投票用紙에는 候補者의 記號・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 및 姓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無所屬候補者는 候補者의 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の 欄에 “無所屬”으로 표시하고, <u>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u>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의 기호와 政黨名을 표시하며, <u>自治區・市・郡議員選舉</u>에 있어서는 候補者의 記號와 姓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⑦ (생략) 第151條(投票用紙와 投票函의 작성)	 ③・④ (현행과 같음) ⑤.....<u>제5항</u> 내지 <u>제7항</u>..... ⑥ (현행과 같음)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의 掲載順位등) ①..... <u>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u>..... ②~⑦ (현행과 같음) 第151條(投票用紙와 投票函의 작성)
---	--

① (생략) ② 하나의 選舉에 관한 投票에 있어서 <u>投票區마다</u> 동시에 2개의 投票函을 사용할 수 없다.	① (현행과 같음) ②..... <u>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u>.....
③~⑦ (생략) 第152條(投票用紙模型등의 公告) ①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投票用紙의 模型을 選舉日前 7日까지 <u>각 投票區마다 公告</u>하여야 한다.	③~⑦ (현행과 같음) 第152條(投票用紙模型등의 公告) ①..... <u>공고</u>.....
② (생략) 第153條(投票案内文의 발송) ① (생략) ② 第1項의 投票案内文은 <u>選舉人名簿確定日의 다음날까지</u> 郵便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第66條(小型印刷物)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傳單型 小型印刷物 또는 책자형 小型印刷物을 발송하는 때에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投票案内文의 발송을 위한 郵便料金は 國家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한다.	② (현행과 같음) 第153條(投票案内文의 발송) ① (현행과 같음) ②.....<u>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u>.....
③·④ (생략) 第154條(不在者申告人에 대한 投票用紙의 발송) ①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舉人에게 발송할 投票	③·④ (현행과 같음) 第154條(不在者申告人에 대한 投票用紙의 발송) ①.....

9일

②~⑤ (현행과 같음)

第155條(投票時間) ①.....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②~④ (현행과 같음)

⑤.....오후 6시(보컬

는 候補者登錄마감일 현재 國會의 多數議席順에 의한 第1黨과 第2黨이 추천한 政黨推薦委員 각 1人으로 하여금 投票用紙의 受領·보관 및 投票所에서의 관리시에 立會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政黨推薦委員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立會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④選舉人は 投票用紙를 받은 후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과 投票參觀人の 앞에서 番號紙를 떼어 番號紙函에 넣은 다음 記票所에 들어가 投票用紙에 1인의 候補者(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를 選擇하여 投票用紙의 해당 欄에 記票한 후 그 자리에서 記票內容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과 投票參觀人の 앞에서 投票函에 넣어야 한다.

⑤ (생략)

⑥選舉人は 投票所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6歲미만의 어린이와 함께 投票所안에 출입할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기표소.....
.....
.....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
.....
.....
.....

⑤ (현행과 같음)

⑥.....초등학생 이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

⑦ · ⑧ (생략)

第158條(不在者投票) ①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舉人은 不在者投票期間중 不在者投票所에 가서 不在者投票管理委員과 不在者投票參觀人 앞에서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로부터 송부받은 발송용 겹봉투·不在者投票用紙 및 身分證明書(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官公署 또는 公共機關이 발행한 證明書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本人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제시하고 本人임을 확인받은 후 記票所에 들어가 不在者投票用紙에 1인의 候補者(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選擇하여 不在者投票用紙의 해당 欄에 記票한 후 그 자리에서 記票內容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
다).....

⑦·⑧ (현행과 같음)

[illegible]

.....

.....

.....

.....

[illegible]

②~④ (현행과 같음)

<삭 제>

⑥ 날인 방법

.....

.....

規則으로 정한다.

第161條(投票參觀) ① (생략)

②投票參觀人은 政黨・候補者・選舉事務長 또는 選舉連絡所長이 候補者마다 2人(大統領選舉에 있어서는 候補者마다 4人)을 선정하여 選舉日前 2日까지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③投票參觀人은 12人(選舉人名簿가 分綴되는 投票區에 있어서는 그 分綴數마다 2人을 더한 數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하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선정・申告한 人員數가 12人을 넘는 때에는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가 추첨에 의하여 指定한 者를 投票參觀人으로 한다. 다만, 投票參觀人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申告한 人員數가 6人에 미달하는 때에는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가 그 投票區를 管轄하는 區・市・郡의 區域안에 居住하는 選舉權者 중에서 本人의 승낙을 얻어 6人에 달할 때까지 指定한 者를 投票參觀人으로 한다.

④~⑥ (생략)

.....

제161조(투표참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2인.....
.....
.....

③.....12인.....
.....
.....
.....
.....
.....
.....4인.....
.....

.....
.....
.....4인.....
.....
.....

④~⑥ (현행과 같음)

⑦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未成年者・第18條(選舉權이 없는 者)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第53條(公務員등의 立候補)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또는 候補者는 投票參觀人이 될 수 없다.

⑧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는 投票參觀人을 6人씩(12人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投票參觀人數의 2分の 1씩) 교대하여 參觀하게 하되, 한 候補者가 선정한 投票參觀人 모두를 동시에 參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選舉人名簿가 分綴되어 있는 投票區에 있어서는 投票參觀人을 그 分綴數마다 2人씩 추가하되, 1人씩 交代參觀하게 하여야 한다.

⑨~⑭ (생략)

第162條(不在者投票參觀) ① (생략)

②不在者投票參觀人은 政黨・候補者・選舉事務長 또는 選舉連絡所長이 候補者마다 不在者投票所別로 2人을 선정하여 選舉日前 9日[第149條(機關・施設안의 不在者投票所)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所의 不在者投票參觀人은 그 不在者投票所의

⑦.....
.....
.....
.....
... 해당하는 자・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⑧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⑨~⑭ (현행과 같음)

第162條(不在者投票參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8일.....
.....
.....
.....

[illegible]

③~⑤ (현행과 같음)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① (헌행과
같음)

②

100미터

③ (현행과 같음)

第173條(開票所) ①・② (생략)

<신설>

③ (생략)

第174條(開票事務員) ① (생략)

②開票事務員은 제147조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되, 關係行政機關의 公務員은 開票事務員總數의 2分の 1을 넘지 못한다. 다만, 關係行政機關의 公務員외의 者만으로 開票事務員總數의 2分の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생략)

④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른 選舉管理委員會委員이나 職員을 開票事務員으로 위촉할 수 있다.

第175條(開票開始) ①開票는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로부터 송부되는 投票函의 3분의 1 이상이 도착되면 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投票函의 도착순위에 따라

第173條(開票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3항의 규정은 개표소에 준용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74조(개표사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③(현행과 같음)

<삭제>

제175조(개표개시) <삭제>

사유를 기재한다.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第179條(無效投票)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投票는 無效로 한다.	第179條(無效投票) ①.....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標외에 다른 사항을記入하거나 候補者(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 에 있어서는 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欄외에 ㉠標를 추 가한 것	6.....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7. (생략)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第181條(開票參觀) ① (생략)	제181조(개표참관) ① (현행과 같음)
②第1項의 開票參觀人은 區・市・ 郡選舉管理委員會의 管轄區域안에 서 실시되는 選舉에 참여하는 政黨 은 8人을, 自治區・市・郡議員選舉 의 候補者와 無所屬候補者는 4人을 선정하여 選舉日前日까지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書面 으로 申告하여 參觀하게 하되, 申告 후 언제든지 交替할 수 있으며 開 票日에는 開票所에서 交替申告를 할 수 있다.	②..... 후보자를 추 천한 정당은 6인..... 3인.....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開票參觀人	③.....

의 申告가 없거나 한 政黨 또는 한 候補者가 선정한 開票參觀人밖에 없는 때에는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選舉權者중에서 本人의 승낙을 얻어 12人に 달할 때까지 선정한 者를 開票參觀人으로 한다.

④~⑧ (생략)

⑨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政黨의 開票參觀人은 4人씩, 自治區・市・郡議員選舉의 候補者와 無所屬 候補者の 開票參觀人은 2人씩(12人以下인 경우에는 參觀人數의 2분의 1씩) 交代하여 參觀하게 하되, 한 政黨 또는 한 候補者가 선정한 開票參觀人 모두를 함께 參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地域區市・道議員選舉 및 自治區・市・郡議員選舉에 있어서는 한 候補者가 선정・申告한 開票參觀人 모두를 함께 參觀하게 할 수 있다.

⑩~⑫ (생략)

第184條(投票紙의 구분) 開票가 끝난 때에는 投票區別로 開票한 投票紙를 有效・無效로 구분하고, 有效投票紙는 다시 候補者(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
.....
.....
.....
.....12인(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6인).....

④~⑧ (현행과 같음)

⑨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⑩~⑫ (현행과 같음)

第184條(投票紙의 구분)
.....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

추천한 政黨을 말한다)別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과 출석한 委員全員이 封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封印을 거부하는 委員이 있는 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開票錄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第185條(開票錄・集計錄 및 選舉錄의 작성등) ①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開票結果를 즉시 公表하고 開票錄을 작성하여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大統領選舉에 있어서는 市・道選舉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開票錄을 송부받은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候補者(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政黨을 말한다)別 得票數를 計算・公表하고 選舉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比例代表國會議員의 議席配分과 관련있는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政黨別 得票數를 市・道選舉管理委員會에 보고

거.....

第185條(開票錄・集計錄 및 選舉錄의 작성등)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②.....
.....
.....
.....
.....
.....
..... <후단 삭제>

하여야 한다.

③市·道選舉管理委員會가 第1項 또는 第2項 後段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大統領選舉에 있어서는 候補者別 得票數를, 比例代表國會議員의 議席配分과 관련 있는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政黨別 得票數를 計算·公表하고, 集計錄을 작성하여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第3項의 集計錄을 송부받은 때에는 大統領選舉에 있어서는 候補者別 得票數를, 比例代表國會議員의 議席配分과 관련있는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政黨別 得票數를 計算·公表하고, 選舉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第189條(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인의 決定·公告·통지)
①比例代表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地域區國會議員總選舉에서 5席이상의 議席을 차지하였거나 有效投票總數[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인의 決定·公告·통지)第4項 後段의 規定

③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집계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에 의하여 當選人이 없는 國會議員 地域區의 有效投票數를 포함한다]의 100分の 5이상을 得票한 각 政黨(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를 제출하지 아니한 政黨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議席割當政黨”이라 한다)에 대하여 地域區國會議員總選舉에서 얻은 得票比率에 따라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을 배분한다. 다만, 地域區國會議員總選舉에서 有效投票總數의 100分の 3이상 100分の 5미만을 得票한 각 政黨에 대하여는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 1席씩을 배분한다.

②第1項의 得票比率은 각 議席割當政黨의 得票數(第188條第4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當選人이 없는 國會議員地域區의 得票數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 및 第4項에서 같다)를 모든 議席割當政黨이 地域區國會議員總選舉에서 얻은 得票數의 합계로 나누고 小數點이하 第5位를 반올림하여 算出한다.

③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된 각 政黨의 得票比率에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②제1항의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이하 이 조에서 “의석정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⑤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定數에서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배분된 議席數를 뺀 數를 곱하여 算出된 數의 整數의 議席을 각 政黨에 배분한 다음에 殘餘議席이 있는 때에는 그 端數가 큰 순위에 따라 각 政黨에 1席씩 배분한다.

④第3項의 경우에 같은 端數가 있는 때에는 그 得票數가 많은 政黨에 배분하고, 그 得票數가 같은 때에는 당해 政黨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⑤政黨에 배분된 比例代表國會議員 議席數가 그 政黨이 추천한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數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議席은 空席으로 한다.

⑥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제출된 政黨別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에 기재된 順位에 따라 政黨에 배분된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當選人을 決定한다.

⑦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第195條(再選舉)第1號 및 第2號 前段(第188條第4項 後段의 경우를 제외한다)·第196條(選舉의 延期) 또는 第198條(天災·地變등으로 인한 再投票)의 사유로 인하여 國會議員地域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전국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의석정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⑦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의 규정은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區의 選舉가 모두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選舉가 종결되지 아니한 당해 國會議員地域區의 選舉人數를 全國選舉人數(第188條第2項 및 같은 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를 실시하지 아니한 國會議員地域區의 選舉人數를 제외한다)로 나눈 數에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定數를 곱하여 얻은 數의 整數를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定數에서 뺀 다음에 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에 따라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을 배분하고 當選人을 決定한다. 다만,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配分이 배제된 政黨중 종결되지 아니한 國會議員地域區의 選舉結果에 따라 配分對象政黨이 추가될 것이 예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政黨마다 比例代表國會議員定數의 100分の 5에 해당하는 整數를 별도로 빼야 한다.

⑧比例代表國會議員의 當選人이 決定된 때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은 그 名單을 公告하고 지체없이 각 政黨에 통지하며, 當選人에게 當選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준용한다.

⑨第187條(大統領當選人の 決定・公告・통지)第4項의 規定은 比例代表國會議員當選人の 決定에 이를 準用한다.

第190條(地方議會議員當選人の 決定・公告・통지) ①~⑧ (생략)

⑨第189條(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の 決定・公告・통지)제8항 및 제9항의 規定은 比例代表市・道議員當選人の 決定・公告・통지에 이를 準用한다.

第194條(當選人の 再決定과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 및 比例代表市・道議員議席의 再配分) ①~③ (생략)

④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比例代表國會議員選舉 또는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 제195조제1호 및 제2호 전단(제188조제4항 후단의 경우를 제외한다)・제196조 또는 제198조의 사유로 인한 選舉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選舉에서의 득표수와 再選舉에서의 득표수를

第190條(地方議會議員當選人の 決定・公告・통지) ①~⑧ (현행과 같음)

⑨.....
.....
...제7항 및 제8항.....
.....
.....

第194條(當選人の 再決定과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 및 比例代表市・道議員議席의 再配分)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198조의 사유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선거에서의 득표수와 재투표.....
.....
.....

합하여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그 득표비율에 <u>議席定數</u>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政黨이 이미 배분받은 議席數를 뺀 수가 큰 순위에 따라 殘餘議席을 배분하고 當選人을 결정한다. 이 경우 <u>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u>에 있어서는 제190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u>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u>..... <u>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제189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u>.....
第195條(再選舉)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u>再選舉(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地域區國會議員選舉를 말한다)</u>를 실시한다. 1. <u>당해 選舉區(地域區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당해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의 候補者가 없는 때</u> 2.~6. (생략) <u><신설></u>	第195條(再選舉) ①..... <u>재선거</u>..... 1. <u>당해 선거구</u>..... 2.~6. (현행과 같음) <u>②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제200조(보궐선거)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u>
第197條(選舉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	第197條(選舉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

選舉) ①・② (생략)

③第1項의 再選舉를 실시함에 있어서 政黨이 合黨한 경우 合黨된 政黨은 그 再選舉의 選舉期間開始日부터 그 다음 날까지 당해 選舉區 選舉管理委員會에 合黨전 候補者중 1人을 候補者로 추천하고,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合黨전 政黨이 제출한 候補者名簿중 하나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合黨된 政黨의 候補者(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호는 당초 選舉 당시의 그 候補者의 記號로 한다.

⑥ (생략)

<신설>

選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
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되 합당전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
니한 자를 추가할 수 없다.

④ (현행과 같음)

⑤.....(비례대
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
천한 정당을 말한다).....
.....

⑥ (현행과 같음)

⑦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
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 사유가 확
정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
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
눈 수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신 설>

⑦ (생 략)

第198條(天災・地變등으로 인한 再投票) ①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投票區의 投票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投票函의 紛失・멸실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당해 投票區의 再投票를 실시한 후 당해 選舉區(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의 當選人을 決定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再投票가

급하여 얻은 수의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89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190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의석을 재배분하고, 그 재배분에서 제외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⑧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실시한 때의 의석 재배분 및 당선인결정에 있어서는 제19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第198條(天災・地變등으로 인한 再投票) ①.....
.....
.....
.....
.....
.....
..... 선거구.....
.....
.....

②.....

당해 選舉區의 選舉結果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再投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當選人을 결정한다. 다만, 國會議員選舉에 있어 제1항의 사유가 地域區 國會議員選舉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으나 比例代表國會議員選舉에는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再投票전에 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을 결정하고 再投票를 실시한다.

③第1項의 再投票를 실시함에 있어서 合黨된 政黨이 추천한 候補者(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候補者名簿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제194조의 比例代表國會議員 및 比例代表市·道議員의 議席 再配分을 위한 得票數의 計算은 그 候補者의 合黨 전 政黨의 得票數에 合算한다.

④·⑤ (생략)

第199條(延期된 選舉등의 실시) 第196條(選舉의 延期)第1項의 延期된 選舉 또는 第198條(天災·地變등으로 인한 再投票)第1項 및 第2項 但書

.....
.....
.....
..... <단서 삭제>

③.....
.....정당이 있는 경우.....
.....
.....
.....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第199條(延期된 選舉등의 실시)
.....
.....
.....제1항.....

의 再投票는 가능한 한 第35條(補
 闕選舉등의 選舉日)의 規定에 의한
 選舉와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第200條(補闕選舉) ①~⑤ (생략)

<신설>

第201條(補闕選舉등에 관한 特例) ①
 ~⑤ (생략)
 ⑥補闕選舉등[大統領選舉에 있어
 闕位로 인한 選舉・第195條(再選舉)
 의 規定에 의한 再選舉 및 延期된
 選舉와 第203條(同時選舉의 범위와
 選舉日)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
 期滿了에 의한 選舉와 동시에 실시
 하는 補闕選舉등을 제외한다]에 있
 어 不在者投票에 관하여는 第158條
 (不在者投票)第1項 내지 第3項 및
 第5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같은 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居所投票者의
 예에 의한다.

.....

제200조(보궐선거) ①~⑤ (현행과 같
 음)

⑥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의 규정
 에 의하여 그 직을 그만두었으나
 후보자등록신청시까지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원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된 때
 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201條(補闕選舉등에 관한 特例) ①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

구하고 選舉區마다 1회를 개최한다.	
第20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에 관한 特例) 同時選舉에 있어서 같은 政黨의 추천을 받은 2人이상의 候補者 또는 그 配偶者나 演說員은 한 場所에서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의 規定에 의한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第20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에 관한 特例)<u>후보자・연설원 또는 사회자는</u>.....
第214條(投票函의 開函등에 관한 特例) 同時選舉에 있어서 第175條(開票開始)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開票順序는 選舉別 또는 그 選舉區의 管轄區域이 작은 選舉區別로 구분하여 행하되, 동시에 計票하는 投票函은 選舉別로 <u>4개</u>이내로 한다.	제214조(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u>제175조(개표개시)제2항</u>..... <u>8개</u>.....
第230條(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投票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選舉人(選舉人名簿作成전에는 그 選舉人名簿에 오를 資格이 있는	第230條(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 1.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 또는 다른 政黨이나 候補 者의 選舉事務長・選舉連絡所 長・選舉事務員・會計責任者・演 說員[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 說・對談)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演說・對談을 하는 者와 第81條 (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 論會)第1項 및 第82條(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第 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對談・討論 을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 또는 參觀人(投票參 觀人・不在者投票參觀人과 開票 參觀人을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에게 金錢・物品・車馬・響 應 기타 財産상의 이익이나 公私 의 職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 속한 者	후보자(예 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2.~5. (생략)	2.~5.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第237條(選舉의 自由妨害罪) ①・② (생략)	第237條(選舉의 自由妨害罪)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이 法에 規定된 演說會場, 演說・ 對談場所 또는 對談・討論會場에서	③.....연설・대답장소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候補者 또는 演說員을 暴行한 者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處罰한다.	
1.~3. (생략)	
④ (생략)	
第240條(壁報 기타 宣傳施設등에 대한 妨害罪) ①・② (생략)	
③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舉事務에 종사하는 者가 第64條(宣傳壁報)의 宣傳壁報・第65條(選舉公報)의 選舉公報・第66條(小型印刷物)의 傳單型 小型印刷物이나 책자형 小型印刷物・第75條(合同演說會)의 告知放送이나 告知壁報 또는 第153條(投票案内文의 발송)의 投票案内文을 부정하게 작성・첨부・발송・방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職務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3. (현행과 같음)
第241條(投票의 秘密侵害罪) ①第167條(投票의 秘密保障)의 規定에 위반하여 投票의 秘密을 침해하거나 選舉日의 投票마감시각종료이전에 選舉人에 대하여 그 投票하고자 하는	④ (현행과 같음)
	第240條(壁報 기타 宣傳施設등에 대한 妨害罪)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13항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제64조.....
	 소형인쇄물.....
	 발송.....
	
	第241條(投票의 秘密侵害罪) ①.....

政黨이나 候補者 또는 投票한 政黨이나 候補者의 표시를 요구한 者와 投票結果를 예상하기 위하여 投票所로부터 300미터이내에서 質問하거나 投票마감시각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公表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생 략)

第244條(選舉事務管理關係者나 施設 등에 대한 暴行·攪亂罪)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舉事務에 종사하는 者(投票事務員·不在者投票事務員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나 參觀人을 暴行·脅迫·誘引 또는 不法으로 逮捕·監禁하거나, 暴行이나 脅迫을 가하여 投票所·開票所 또는 選舉管理委員會 事務所를 騷擾·교란하거나, 投票用紙·投票紙·投票補助用具·電算組織등 投票와 開票에 관한 設備 또는 選舉人名簿 기타 選舉에 관한 書類나 選舉에 관한 印章을 竊取·훼손 또는 탈취한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상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
.....
.....100미터.....
.....
.....
.....
.....
.....

② (현행과 같음)

第244條(選舉事務管理關係者나 施設 등에 대한 暴行·攪亂罪)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
.....
.....
.....
.....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손괴.....
.....

第245條(投票所등에서의 武器携帶罪)

① (생략)

②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에 規定된 물건을 지니고 이 法에 規定된 演說會場, 演說·對談場所 또는 對談·討論會場에 들어간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 (생략)

第247條(詐僞登載·虛僞捺印罪) ①詐

僞의 방법으로 選舉人名簿(不在者申告人名簿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者, 허위로不在者申告를 한 者, 특정한 選舉區에서 投票할 目的으로 選舉人名簿作成基準日전 30日부터 選舉人名簿作成滿了일까지 住民登錄에 관한 허위의 申告를 한 者 또는 第157條(投票用紙受領 및 記票節次)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署名 또는 拇印을 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생략)

第250條(虛僞事實公表罪)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目的으로 演說·放送·

第245條(投票所등에서의 武器携帶罪)

① (현행과 같음)

②.....연설·대담장소.....

③ (현행과 같음)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①...

.....서명·날인.....

② (현행과 같음)

第250條(虛僞事實公表罪) ①.....

.....

第255條(不正選舉運動罪) ①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2. (생략)

3. 第62條(選舉事務關係者의 選任)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舉事務長 · 選舉連絡所長

第255條(不正選舉運動罪)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1항 내지 제3항.....

.....

이나 選舉事務員을 選任한 者
<신 설>

4. 第75條(合同演說會)제8항의 規定
에 위반하여 政黨・候補者등에
의한 演說會를 개최한 者

5. 第77條(政黨・候補者등에 의한
演說會)第1項・第2項・第4項(開催
時間에 한한다) 第6項 또는 第8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政黨・候
補者등에 의한 演說會를 개최한
者

6. 第80條(演說禁止場所)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舉運動을 위한 演說
會를 개최하거나 演說・對談을
한 者

7. (생 략)

8. 第81條第7項[第82條(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第4
項 및 第82條의2(公營放送主管
텔레비전 對談・討論會)第8項에
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對談・討論會를
개최한 者

.....

3의2. 제68조(어깨띠)제2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어깨띠를 선거운동
을 위하여 착용하거나 하게 한
자

<삭 제>

<삭 제>

6.
.....연설
・대답을 한 자

7. (현행과 같음)

8.
.....제4항
.....
.....
.....
.....

9. (생략)

10. 第86條(公務員등의 選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第1項第1號 내지 第4號·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者 또는 같은 條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행위를 한 者

11. 第87條(團體의 選舉運動禁止)의 規定에 위반하여 특정 政黨이나 候補者를 支持·反對하거나 支持·反對할 것을 勸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者

12·13. (생략)

14. 第89條의2(私組織등을 이용한 選舉運動의 금지)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私組織 기타 團體를 設立·設置한 者, 같은 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金品·饗應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받은 者 또는 당해 團體나 組織 또는 그 代表의 名義로 選舉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

15. (생략)

9. (현행과 같음)

10.
..... 제2항 내지 제4항
..... 제5항
.....

11.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설치하거나 하게 한 자

12·13. (현행과 같음)

<삭제>

15. (현행과 같음)

5.~8. (생략)

③ (생략)

<신설>

第256條(各種制限規定違反罪) ① (생략)

②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選舉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

5.~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자의 명칭 등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명시한 자,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동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동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56條(各種制限規定違反罪)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가. (생략)

나. 第77條(政黨·候補者등에 의한
演說會)第10項 後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演藝등의 행위를 하거
나 하게 한 者 또는 같은 條 第
1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標識
또는 宣傳物을 設置·게시하거
나 開催場所밖에 확성기, 錄
音·錄畫器를 設置하거나 애드
벌룬數를 넘어 사용하거나 하게
한 者

다. (생략)

라. 第84條(無所屬候補者등의 政黨
標榜禁止)의 規定에 위반하여
특정 政黨으로부터의 支持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한 者

마. 第82條의3(컴퓨터통신을 이용
한 選舉運動)第5項의 規定에 위
반하여 各級選舉管理委員會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바.~자. (생략)

차. 第102條(夜間演說등의 제한)의
規定에 위반하여 夜間에 演說
會, 演說·對談 또는 對談·討
論會를 개최한 者

카. 第103條(各種集會등의 制限)第

가. (현행과 같음)

<삭제>

다. (현행과 같음)

라.무소속후보자.....
.....
.....
.....

마.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
한 선거운동)제4항.....
.....
.....

바.~자. (현행과 같음)

차.
.....연설·
대담.....
.....

카.제

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各種集會등을 開催하거나 하게 한 者 타. 第104條(演說會場에서의 騷亂行爲등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여 演說會場등에서 秩序를 亂하게 하거나 蠟燭을 사용하거나 하게 한 者 파. (생 략) 하. 第111條(議政活動 보고)第1項 但書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舉期間開始日부터 選舉日까지 議政活動을 보고한 者 2. 選舉秩序와 관련하여 다음 各目の 1에 해당하는 者 가.·나. (생 략) 다. 第76條(合同演說會場の 秩序維持)第2項의 秩序紊亂行爲에 대한 制止命令에 불응한 者 라.~사. (생 략) 3. 다음 各目の 1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가.~다. (생 략) <신 설>	2항 내지 제4항..... 타.연설·대답장소..... 파. (현행과 같음) 하.선거일 전 90일..... 2. 가.·나. (현행과 같음) <삭 제> 라.~사. (현행과 같음) 3.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
--	--

<신 설>

③ 政黨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黨部에 대하여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고, 당해 黨部の 幹部 또는 黨員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5. (생 략)

6. 第141條(黨員集會의 제한)의 規定(第2項 및 第4項을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黨員集會를 개최한 者

7. 第142條(黨職者會議의 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黨職者會議을 개최한 者

8. 第143條(黨員教育의 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黨員教育을 실시한 者

9. (생 략)

<신 설>

치 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4.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보호)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
.....
.....
.....
.....
.....
.....

1.~5. (현행과 같음)

6.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1항 및 제4항(철거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

<삭 제>

<삭 제>

9. (현행과 같음)

10.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동

④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생략) 2. 第61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舉事務所나 選舉連絡所를 設置한 者 <신 설> 3. 第62條(選舉事務關係者の 選任)第5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舉事務長・選舉連絡所長 또는 選舉事務員을 選任한 者 또는 同條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舉運動을 하는 者를 모집한 者 4.~6. (생략) 7. 第78條(公共施設등의 무료이용)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場所의 사용을 許可하지 아니한 者 8.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第1項・第3項 내지 第5項,	조제2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소장 또는 유급사무직원을 둔 자 ④..... 1. (현행과 같음) 2.제5항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의2.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7항의 規定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6항..... 동 조제7항..... 4.~6. (현행과 같음) <삭 제> 8.
---	---

第6項(標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第7項 내지 第9項(身分證明書を 달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第1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을 한 者	제7항 및 제9항.....
9. (생략)	9. (현행과 같음)
10. 第117條의2(祝儀・賻儀金品등의 상시제한)第1項第1號・第2號本文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金品 기타 利益 또는 祝儀・賻儀金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지시・勸誘・斡旋 또는 요구한 者	<삭제>
11. ・ 12. (생략)	11. ・ 12. (현행과 같음)
⑤第117條의2(祝儀・賻儀金品등의 상시제한)第1項第2號 但書・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慶弔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지시・勸誘・斡旋・요구한 者 또는 같은 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結婚式의 主禮行爲를 한 者는 5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삭제>
第257條(寄附行爲의 금지제한등 違反罪)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第257條(寄附行爲의 금지제한등 違反罪)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제4항
-
- ②
- 포함한다) · 정당의 대표자 ·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기

附를 받은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④ (생 략)

第258條(選舉費用不正支出등 罪)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政黨・候補者・選舉事務長・選舉連絡所長・會計責任者 또는 會計事務補助者가 第122條(選舉費用制限額등의 公告)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한 選舉費用制限額의 200分の 1이상 초과하여 選舉費用을 支出한 때

2. 會計責任者가 正當한 사유없이 第132條(收入과 支出報告書)第1項의 收入과 支出報告書를 당해 選舉管理委員會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부를 받은 자[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5항의 規定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第258條(選舉費用不正支出등 罪) ①

.....

1. 제122조(선거비용 제한액의 公告).....

2.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하게 한 때

②.....

1. · 2. (생략) 3. <u>政黨 · 候補者 會計責任者 또는 選舉費用에서 支出하는 費用을 지급받거나 받을 權利가 있는 者 기타 關係인이 第134條(資料提出要求等)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u> 第260條(兩罰規定) <u>會社[第114條(政黨 및 候補者の 家族등의 寄附行爲制限)의 會社등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任員이나 構成員이 그 業務에 관하여 이 章에 규정된 罪를 범한 때에는 당해 會社등이 한 것으로 보아, 그 行爲者를 해당 각 條의 刑에 處하는 외에 당해 會社등에 대하여도 해당 각 條의 罰金刑에 處한다.</u> 第261條(過怠料의 賦課 · 徵收等) <신설> ① 제70조(방송광고)제3항 ·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10항 · 제	1. · 2. (현행과 같음) 3. <u>제134조(자료제출요구등)제3항의 規定을 위반한 자</u> 제260조(양벌규정) <u>정당 · 회사 기타 법인 ·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 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u> 第261條(過怠料의 賦課 · 徵收等) ①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1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3항[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3조(경력방송)제1항(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한한다)· 제2항 또는 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이 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생략)
2. 다음 각目の 1에 해당하는 者가.~라. (생략)
- 마. 第77條(政黨·候補者등에 의한

에 처한다.

1. 제70조(방송광고)제3항·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10항·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3항[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3조(경력방송)제1항(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한한다) 및 제2항·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제3항 또는 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③.....
.....
.....
.....

1. (현행과 같음)
2.
가.~라. (현행과 같음)

<삭 제>

演說會)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
여 그 分擔內譯을 政黨・候補者
등에 의한 演說會의 開催申告書
에 명시하지 아니한 者 또는 같
은 條 第13項의 規定을 위반하
여 告知壁報를 撤去하지 아니한
者

바. (생략)

<신설>

3.~6. (생략)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생략)

2. 다음 各目の 1에 해당하는 者
가. (생략)

<신설>

바. (현행과 같음)

사.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3항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
제6항 및 제173조(개표소)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협조요구에 응하지 아
니한 자

3.~6.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가. (현행과 같음)

나.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선거사무소에 간판・현

나. (생 략) 다. 제68조제2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어깨띠를 選舉運動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하게 한 者 라.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動車와 擴聲裝置에 標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演說・對談을 한 者 마. (생 략) <신 설> 3. (생 략) 4. 다음 各目の 1에 해당하는 者 가. 나. (생 략) 다. 第140條(創黨大會등의 개최와 告知의 제한)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創黨大會등의 告知壁報	관・현수막을 설치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다. (현행 나목과 같음) <삭 제> 라.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마. (현행과 같음) 바. 제147조제9항, 제148조제5항 또는 제174조(개표사무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3. (현행과 같음) 4. 가. 나. (현행과 같음) 다.표지.....
---	---

와 標識를 지체없이 撤去하지 아니한 者 라. 第141條(黨員集會의 제한)第2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多數人이 왕래하는 場所 또는 공개된 場 所가 아닌 場所에서 개최하거나 同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黨員集會의 告知壁報와 標識를 지체없이 철거하지 아니한 者 마. 第142條(黨職者會議의 제한)第 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擴大黨 職者會議의 開催申告를 지체하 거나 申告하지 아니하고 개최한 者 바. 第143條(黨員教育의 제한)第3 項에 規定된 場所가 아닌 場所 에서 黨員教育을 실시한 者 사. (생 략) 5. · 6. (생 략) <신 설>	 라. 제2항 에 規定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서 당원집회를 개최하거나..... 표지..... <삭 제> <삭 제> 사. (현행과 같음) 5. · 6. (현행과 같음) ⑤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등의 금지)의 規定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제공받 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	---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選舉

1.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2. 입당의 대가로 금전·물품·음
식물을 제공받은 자
3.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공
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담·
토론회 기타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
함한다)가 개최하거나 정당의 대
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또
는 후보자가 참석한 모임·집회
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물품·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4.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규정된 자로부터 야유
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
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물
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5.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관
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
의·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자
6.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
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⑥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
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

管理委員會(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 한다)가 過怠料處分對象者가 政黨・候補者 및 그 家族・選舉事務長・選舉連絡所長・選舉事務員・會計責任者 또는 演說員인 때에는 당해 候補者의 寄託金중에서 공제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납입하고, 기타의 者인 경우에는 그 違反者에게 부과하며, 納付期限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管轄稅務署長에게 委託하고 管轄稅務署長이 國稅滯納處分の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2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⑦第5項 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

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規定에 의한 과태료처분대상자……………

……………기타의 자와 제5항의 規定에 의한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⑦제6항……………

⑧제6항……………제7항……………

⑨제7항 또는 제8항……………

異議提起 또는 裁判의 진행은 過怠
料處分の 효력이나 그 執行 또는
節次の 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
다.

<신 설>

.....
.....
.....
..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
호) ①선거범죄[제16장 벌칙에 규정
된 죄(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
함한다)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신고·
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
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
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
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
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
지),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 및 제16
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등이

<신 설>

第263條(選舉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第122條(選舉費用制限額 등의 公告)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選舉費用制限額의 200分の 1이상을 超過支出한 이유로 選舉事務長 또는 選舉事務所의 會計責任者가 懲役刑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그 候補者의 當選은 無效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誘導 또는 挑發에 의하여 당해 候補者의 當選을 無效로 되게 하기 위하여 支出한

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①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第265條(選舉事務長등의 選舉犯罪로 인한 當選無效) 選舉事務長・選舉事務所の 會計責任者 또는 候補者の 直系尊・卑屬 및 配偶者가 당해 選舉에 있어서 第230條(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第234條(當選無效誘導罪) 또는 第257條(寄附行爲의 금지제한등 違反罪)第1項중 寄附行爲를 한 罪를 범함으로 인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그 候補者(大統領候補者,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 및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無效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誘導 또는

.....
....

②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
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265條(選舉事務長등의 選舉犯罪로 인한 當選無效)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제1항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정치자금

挑發에 의하여 당해 候補者의 당선을 無效로 되게 하기 위하여 罪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부정수수죄)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는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및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된 때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당해 정당·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정당·후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266條(選舉犯罪로 인한 公務擔任등의 제한) ① (생략)	第266條(選舉犯罪로 인한 公務擔任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第263條(選舉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또는 第265條(選舉事務長등의 選舉犯罪로 인한 當選	②…………… …………… ……………

無效)의 規定에 의하여 當選이 無效로 된 者는 당해 補闕選舉등의 候補者가 될 수 없다.

第268條(公訴時效)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
.....자(그 기소후 확정판결전에 사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

第268條(公訴時效) ①.....
.....6월
(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36조(회계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죄의 공소시효는 그 보존기간만료일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제270조의2(피고인의 출정) ①선거법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

	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第271條(不法施設物등에 대한 조치 및 代執行) ①・② (생략)	第271條(不法施設物등에 대한 조치 및 代執行) ①・② (현행과 같음)
③第56條(寄託金)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寄託金에서 부담하는 代執行費用의 공제・納入・徵收委託등에 관하여는 第261條(過怠料의 賦課・徵收등)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 제5항.....
第272條의2(選舉犯罪의 調査등) ① 各級選舉管理委員會(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委員・職員은 第18條(選舉權이 없는 者)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選舉犯에 관하여 그 犯罪의 嫌疑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候補者와 選舉事務長・選舉連絡所長 및 選舉事務員	第272條의2(選舉犯罪의 調査등) ① 선거범죄.....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④各級選舉管理委員會委員・職員은
금품・響應 제공의 選舉犯罪 調査
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
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④

선거범죄

.

.

는 때에는 選舉管理委員會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⑦ (생략)

<신설>

.....
.....

다만, 선거기간중 후보자에 대하여
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
다.

⑤~⑦ (현행과 같음)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
사)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
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
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
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의 승
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게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
를 포함한다)·주민등록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인터넷 로그기록자
료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
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이용기간·이용
요금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설치대수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

1.~7. (현행과 같음)

②

.....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
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

하여야 하며, 補闕選舉등에 있어서는 그 事務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選舉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日까지 市·道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舉에 있어서는 해당 市·道選舉管理委員會에, 自治區·市·郡議會議員 및 長의 選舉에 있어서는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에 납부하여야 한다.

1.~3. (생략)

③~⑤ (생략)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자를 제외한다)이 선거기간(선거부정감시단원의 경우 선거부정감시단을 두는 시기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 설>

[illegible]

1.~3. (현행과 같음)

③~⑤ (현행과 같음)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
.....
.....
.....
.....
기간을 말한다.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제3

<신 설>

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지급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공무수행중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보상금의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